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ensation Practices

BNK 금융지주

Beyond No.1 in Korea

BNK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2월 28일

BNK 금융지주 대표이사 빈 대 인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page

1.지배구조 일반	1
2.이사회	9
3.임원후보추천위원회	42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92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	147
6.감사위원회	158
7.리스크관리위원회	174
8.이사회운영위원회	187
9.ESG위원회	193
10.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199
11.그룹경영관리협의회	207
12.리스크관리협의회	211
13.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17
14.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219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보수위원회	221
2.보수체계	232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BNK Financial Group

BNK 금융지주

Beyond No.1 in Korea

BNK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나. 지배구조 현황

다. 관련 규정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및 금융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내규로 정하여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 : 85.7%)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23년말 현재 금융분야 3명, 법률분야 2명, 경영분야 1명, 경제분야 1명)하여,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이사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구성원 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 및 경험이 최대한으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bnkfg.com)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노력들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2017년 B등급 → 2023년 A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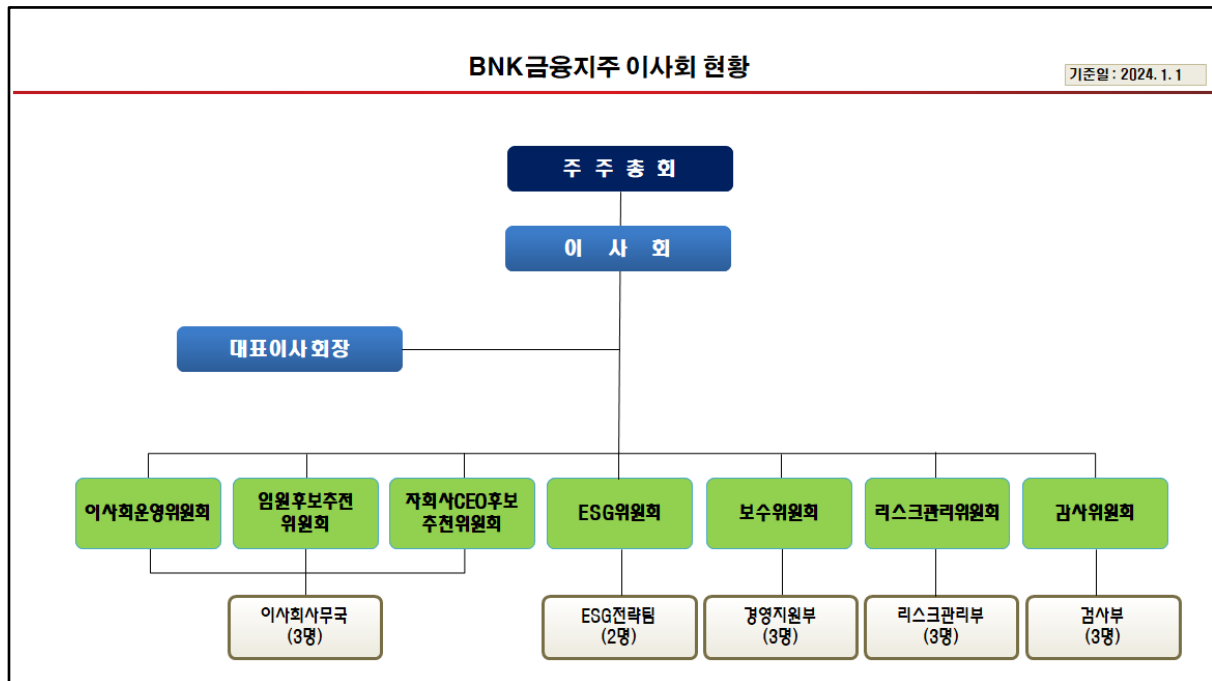
당사는 2017년 이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지속한 결과, 한국ESG기준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은 연속하여 A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참고] 한국ESG기준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등급(www.cgs.or.kr)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A+	B	B+	A+	A+	A+	A	A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당사의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권력의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7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6명으로 총 이사 수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반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 이해관계인이나 기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선임할 것을 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제6차 이사회 제1호 결의안건(안건명 : 이사회 의장 선임(안))을 통해 사외이사인 최경수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지배구조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장 유

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 7)

상기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일정 기준 충족 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감사위원회는 2/3 이상 사외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토록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회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발굴·관리·검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으로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및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6명) 및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

임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다양한 경력·배경·성별 등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당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상법 제382조 제3항 3호(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하며, 당사는 2023년 말 현재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 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상임·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 위임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 관련 중요사항 의결	6/7	의장 최경수 (사외이사)	정관 제44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이사회규정 제11조
이사회운영 위원회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6/6	위원장 최경수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3조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임원 후보 검증 및 심사, 후보 추천	4/4	위원장 정영석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보수위원회	○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제고 방안 수립 ○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보상체계 수립	4/4	위원장 이광주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
리스크관리 위원회	○ 회사 및 계열회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준수 여부 감사·감독	4/4	위원장 김수희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감사위원회	○ 회사 등의 감사계획 수립, 집행, 결과 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법령,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4	위원장 김병덕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
ESG위원회	○ 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6/7	위원장 박우신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의2 ESG위원회규정 제6조
자회사 CEO후보 추천위원회	○ 자회사 CEO 후보의 심사 및 추천 ○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4	위원장 이광주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의2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로 운영(정관 미 반영)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변경으로 반영 예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규정
- 첨부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 첨부5.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첨부8.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9. ESG위원회규정
- 첨부10.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11.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 첨부12. 자회사CEO경영승계규정
- 첨부13. 사외이사운영규정
- 첨부14.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 첨부15. 그룹 내부통제규정
- 첨부1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2.이사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이사)

다.활동내역

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마.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 | 이사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전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초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 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및 식견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가)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4). 그룹 경영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11)

이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2023년 하반기 중 2024년도 경영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 11월 지주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통한

의견 수렴, 당사 대표이사와 자회사 CEO로 구성된 2023년도 제2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3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24년 그룹 경영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그룹 경영계획]

1.경영방침 : 「VISION 2030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2.2024년 그룹 재무계획

- ①그룹 총자산 : 180.7조원
- ②그룹 당기순이익 : 8,500억원 이상
- ③ROA : 0.59% 이상
- ④ROE : 7.98% 이상
- ⑤BIS총자본비율 : 14.00% 이상
- ⑥보통주자본비율 : 11.70% 이상
- ⑦고정이하여신비율 : 0.59% 이하
- ⑧이중레버리지비율 : 118.38% 이내
- ⑨부채비율 : 28.71% 이내

3.그룹 5대 전략과제

- ①기초체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토대 마련
- ②자회사 업종간 경쟁우위 확보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③디지털 실행력 강화 및 신성장 사업모델 다각화
- ④내부통제 혁신과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 ⑤BNK 특화 상생금융 추진 및 ESG 경영 내재화

이사회는 그룹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룹 경영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정관 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

습니다. (정관 § 44, 이사회규정 § 11)

이에 따라 2023년 2월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관 변경 사유는 배당금액 결정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 및 중간배당 구분 없이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배당기준일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정관 일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경영계획규정 § 4)

이 경우 예산은 그룹 경영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및 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은 2024년 그룹 경영계획과 함께 2023년 12월 제13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그룹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경비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인건비	준인건비	물건비	합계		
7,547	2,254	3,574	13,375		
2.자본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업무용 부동산	업무용 동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합계	감가상각비
1,300	715	1,462	944	4,421	1,766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2024년 1월 초안을 마련한 후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4년 2월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그룹 결산의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목표	실적
당기순이익	8,700	6,303
총자산	1,664,000	1,705,159
자기자본	113,577	106,707
ROA	0.65	0.47
ROE	8.55	6.33
BIS총자본비율	13.35	13.82
고정이하여신비율	0.45	0.73

라)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2023년 중 당사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법령 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 15, 이사회규정 § 11), 2023년 중에는 「그룹 내부통제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사인은 2023년도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2월 2일 제2차 이사회에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기능 활동 현황, 자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모니터링 실시 결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현황 등 주요 점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 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그룹 리스크 철학 및 리스크관리 원칙을 정하고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리스크 분석 및 각종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룹 리스크 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본문 7.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 15, 지배구조내부규범 § 11, 이사회규정 § 11)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그리고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 실시여부 및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CEO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에 '사임'을 신설하여 CEO 사임 시 비상승계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CEO 내부후보군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2023년 CEO 내부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는 이사회규정 상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계열사와 지주간의 거래 등이 당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3월 중 비상임이사 2명이 CEO로 재임 중이었던 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이 당사와 거래관계 발생 시 사전에 이사회 부의를 통해 거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안)”의 건을 부의하여 지주와 부산은행간의 연수원 이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2023년 비상임이사 2명이 중도사임함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해상충행위 관리 및 감독 관련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 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아) 기타

당사의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이사회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6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의 수는 정관 제34조에서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이사 총원수는 7명으로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1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총원수를 7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 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사 총원수를 15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 총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최경수, 박우신)이 재선임 되었고, 사외이사 3명(유정준, 허진호, 이태섭)은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신규로 사외이사 3명(이광주, 김병덕, 정영석)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비상임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안감찬 이사(前 부산은행 은행장) 및 이두호 이사(前 BNK캐피탈 대표이사)는 2023년 3월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하였으며, 사임 이후 최초로 개최된 2023년 4월 27일 제8차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중도 사임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절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장기 재임에 따른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써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첫째,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둘째,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 7)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 8)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첫째,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3년말 현재 전문분야별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외이사						사내이사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금융	●			◎	●		●
경제	◎			●	◎		
경영	◎	●					◎
재무/회계	◎						
법률			●			●	

* ● : 주된 전문분야, ◎ : 추가적인 전문분야(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3년 3월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최경수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경수 이사는 2021년 3월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금융분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자문 역량 및 이사회 참여의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2023년 3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임기 1년) 되었습니다.

2)구성원

가)최경수(現)

- 직위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1.03.26 ~ 2024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의장	위원장	-	위원	-	위원	위원	-

- 주요 경력
 - 세무법인 두리 비상근 고문(現)
 - 부산은행 사외이사
 - 한국거래소 이사장
 - 현대증권 대표이사
 - 조달청장

나)빈대인(現)

- 직위 :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7 ~ 2026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	-	-	-	-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 (주)부산은행 은행장
 - (주)부산은행 부행장(미래채널본부)
 - (주)부산은행 부행장(신금융사업본부)
 - (주)부산은행 부행장보(경남영업본부)
 - (주)부산은행 본부장(북부지역본부)

다) 박우신(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1.03.26 ~ 2024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	-	위원	위원장	-

- 주요 경력
 - (주)씨텍 대표이사
 -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라) 김수희(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5 ~ 2024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	위원장	위원	위원	-

- 주요 경력
 - 부산은행 사외이사
 - BNK캐피탈 사외이사
 -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마) 이광주(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7 ~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	위원	위원장

- 주요 경력

- 부산은행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SC금융지주 및 SC제일은행 사외이사
- 한국은행 부총재보

바) 김병덕(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7 ~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위원	-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 KB생명보험 사외이사
- 한국연금학회 회장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現)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사) 정영석(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3.03.17 ~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3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CEO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 법제처 법제자문관(입법자문관) (現)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 한국해법학회 부회장(現)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現)

아) 유정준(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18.03.23 ~ 2023.03.17
- 담당 업무(2023.01.01 ~ 2023.03.17)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의장	위원장	위원	-	위원	-	위원

- 주요 경력
 -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자) 허진호(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19.03.28 ~ 2023.03.17
- 담당 업무(2023.01.01 ~ 2023.03.17)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장	위원	-	-	위원

- 주요 경력
 -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경남은행 사외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차)이태섭(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1.03.26 ~ 2023.03.17
- 담당 업무(2023.01.01 ~ 2023.03.17)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위원	-	위원	위원장

- 주요 경력
 -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카)안갑찬(前)

- 직위 : 비상임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5 ~ 2023.03.31
- 담당 업무(2023.01.01 ~ 2023.03.31)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	-

- 주요 경력
 - 부산은행 은행장 / 은행BU장
 - 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행장 (경영기획본부, 마케팅본부, 여신운영그룹/여신지원본부)
 - 부산은행 본부장(영업본부장)

타)이두호(前)

- 직위 : 비상임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5 ~ 2023.03.31
- 담당 업무(2023.01.01 ~ 2023.03.31)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	-

- 주요 경력
 - BNK캐피탈 대표이사 / 투자BU장
 - 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행장(경남영업본부)
 - 부산은행 본부장(IB사업단)

파)정성재(前)

- 직위 : 일시대표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12.08 ~ 2023.03.17
- 담당 업무(2023.01.01 ~ 2023.03.17)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일시대표 이사	-	-	-	-	-	-

- 주요 경력
 - BNK금융지주 전무(그룹 전략재무부문장, 그룹 경영지원부문장)
 - BNK금융지주 상무(그룹 경영지원부문)
 - 부산은행 상무(업무지원본부)
 - 부산은행 지점장, 검사부장, 임원부속실장

3) 요약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최경수	사외	이사회 의장 운영위 보수위 감사위 ESG	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03.12 조달청장	21.03.26	24.3월 정기주총	33개월
빈대인	상임	대표이사 회장 ESG 자추위	17.09 부산은행 은행장 15.01 부산은행 부행장 14.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3.01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23.03.17	26.3월 정기주총	9개월
박우신	사외	ESG위원장 운영위 감사위 임추위	14.02 (주)씨텍 대표이사 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 /윤리경영부문장 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 홍보 총괄임원	21.03.26	24.3월 정기주총	33개월
김수희	사외	리스크위원장 운영위 감사위 임추위 ESG	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21.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0.03 BNK캐피탈 사외이사 19.06 (주)지어소프트 법무팀장 19.06 (주)오아시스 법무팀장 09.12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2.03.25	24.3월 정기주총	21개월
이광주	사외	보수위원장 자추위원장 운영위 리스크 임추위 ESG	17.03 부산은행 사외이사 10.09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10.06 한국SC금융지주 및 SC제 일은행 사외이사 07.04 한국은행 부총재보 06.02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3.03.17	25.3월 정기주총	9개월
김병덕	사외	감사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리스크 ESG 자추위	19.03 KB생명보험(주) 사외이사 19.01 한국연금학회 회장 14.07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 위원 08.08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 위원(現) 03.08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23.03.17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정영석	사외	임추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리스크 ESG 자추위	19.02 법제처 법제자문관(現) 18.06 대한상시중재원 중재인(現) 14.09 한국해법학회 부회장(現) 05.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99.03 한국해양대 교수(現)	23.03.17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상기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이사회운영위원회 / 임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 보수위원회

리스크: 리스크관리위원회 / 감사위: 감사위원회 / ESG : ESG위원회

자추위: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4)2023년 기간 내 퇴임 이사 현황(2023.1.1~2023.12.31)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유정준	사외	이사회 의장 운영위 리스크 임추위 ESG	13.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12.05 한양증권(주) 고문 06.0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98.10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18.03.23	23.3월 정기주총	60개월
허진호	사외	임추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ESG	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03.04 경남은행 사외이사 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19.03.28	23.3월 정기주총	48개월
이태섭	사외	ESG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감사위 임추위	20.03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18.03 하나자산신탁(주) 사외이사 09.09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7.03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02.12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21.03.26	23.3월 정기주총	24개월
안감찬	비상임	이사회	21.04 부산은행 은행장 19.01 부산은행 부행장 17.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6.01 부산은행 본부장 13.12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	22.03.25	25.3월 정기주총	12개월 주1)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이두호	비상임	이사회	17.10 BNK캐피탈 대표이사 16.01 부산은행 부행장 15.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4.01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11.0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장	22.03.25	25.3월 정기주총	12개월 주2)
정성재	상임	일시 대표이사 (이사회)	22.12 BNK금융지주 일시대표이사 21.04 BNK금융지주 전무(그룹 전략재무부문장) 20.04 BNK금융지주 전무(그룹 경영지원부문장) 19.01 BNK금융지주 상무 18.01 부산은행 상무	22.12.08	23.3월 정기주총	4개월

주1) 임기 만료 전 중도사임(2023.03.31)에 따라 실제 재임기간은 12개월

주2) 임기 만료 전 중도사임(2023.03.31)에 따라 실제 재임기간은 12개월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총 13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34건, 보고안건 51건으로 총 85건의 안건을 결의 및 보고 받았으며, 이사의 참석률은 98.0%로 당초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참석률 목표치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는 총 43회 소집되어 결의안건 44건, 심의안건 6건, 보고안건 44건을 결의, 심의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0%로 이사회 및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등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의견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등 개최 전에 반영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23.01.19(목) 12:50~13:10

[안건 통지일 : 2023.01.17(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사내이사 후보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2022년 제9차 및 2023년 제1차,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

[결의안건]

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후보(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확정

나)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2023.02.02(목) 10:50~12:30

[안건 통지일 : 2023.01.27(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결과 및 계획 수립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2022년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계획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기주식 취득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다.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라.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마.2023년도 이사회 구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바.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보고안건]

- 가.자문위원 위촉 보고 : 당사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나.2022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2년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 다.20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 2022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을 보고
-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 2022년 4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 마.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 2022년 중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결과 및 계획 수립 : 2022년 중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실적 및 수행결과 평가,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및 교육계획 수립 보고
- 사.2022년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계획 점검결과 보고 : 2022년도 사업계획 점검 결과 및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점검 결과를 보고

[결의안건]

가.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 그룹 당기순이익 8,102억원, ROE 8.44%, BIS총자본비율

- 13.65%, 고정이하여신비율 0.45% 및 주당 배당금 625원 지급 등을 승인
- 나.자기주식 취득 승인(안) : 주가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 위한 자기주식 취득(160억원) 승인
- 다.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안) :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만기도래(2건, 합 원화 2,500억원)에 따른 콜옵션 행사의 건 결의
- 라.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 2022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결과 승인
- 마.2023년도 이사회 구성(안) : 2023년 지주 이사회 구성 관련 이사의 수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등 결정
- 바.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안) : 2022년 제13차 이사회에서 기 승인된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을 추가(부산은행 연수원 이용 관련 거래)

다)202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3.02.07(화) 10:00~10:20

[안건 통지일 : 2023.02.06(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결의안건]

가.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안) : 지주 회장 사임에 따른 일시대표이사 체제 감안, 자회사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지주 회장이 추천하는 CEO후보군을 이사회 결의로 결정(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절차 직접 진행)

라)202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3.02.23(목) 11:40~12:30

[안건 통지일 : 2023.02.22(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2년도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보고
 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감사위원회 심의사항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4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1명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2명 확정의 건 결의
 나.정관 일부 변경(안) : 배당기준일 결정 및 공고에 관한 내용 변경의 건 결의
 다.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2023년도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보수한도의 승인
 라.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안)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시 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 실시의 건 결의

마)202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23.03.10(금) 10:00~10:20

[안건 통지일 : 2023.03.08(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1.이사 성명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고문 위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고문 위촉(안) : 당사 고문 신규 위촉 건을 결의

바)2023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3.03.17(금) 11:20~12:00

[안건 통지일 : 2023.03.13(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대표이사 회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권으로 의결권 제한

주2)본인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권으로 의결권 제한

[보고안건]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 이사회 내 위원회(총 6개)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선임한 내용 보고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 사외이사운영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등이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대학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제공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

[결의안건]

-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 이사회규정 의거 사외이사인 최경수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결의
- 나.대표이사 회장 선임(안) :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반대인 사내이사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 결의
- 다.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 2023년 이사회 내 위원회(총 6개) 구성을 위한 각 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사)2023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23.3.27(월) 10:00~10:20

[안건 통지일 : 2023.03.23(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안갑찬	이두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안갑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가결
나.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결의안건]

-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재무관리 업무) 임면 결의
- 나.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안) :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의 중도사임에 따라 신규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결의

아)2023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 2023.04.27(목) 12:00~13:20

[안건 통지일 : 2023.04.21(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자회사 자금지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중장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비상임이사 중도 사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차.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 가.2023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 그룹 당기순이익 2,568억원, ROE 10.49%, BIS총자본비율 13.54%, 고정이하여신비율 0.52% 등 가결산 주요내용 보고
- 나.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 : 2023년 2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보고
- 다.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결과 보고 : 2023년 2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 결과를 보고
- 라.자회사 자금지원 결과 보고 : 2022년 13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회사(BNK투자증권) 자금지원 결과를 보고
- 마.중장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보고 : 중장기 자본관리 정책(보통주자본비율의 점진적 개선 추진) 및 주주환원 정책을 보고
- 바.비상임이사 중도 사임 보고 : 비상임이사 2인(안감찬, 이두호)의 중도 사임을 보고
- 사.경영진 임면 보고 :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아.자문위원 위촉 보고 : 당사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고
- 차.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3년 1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보고

[결의안건]

- 가.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 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임대인: 부산은행) 갱신의 건 결의

자)2023년도 제9차 (정기)이사회 : 2023.07.26(수) 15:50~17:00

[안건 통지일 : 2023.07.1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상반기 사업계획 진행 상황 점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자기주식 소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2023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 그룹 당기순이익 4,602억원, ROE 9.37%, BIS총자본비율 13.44%, 고정이하여신비율 0.57% 등 가결산 주요내용 보고

나.2023년 상반기 사업계획 진행상황 점검 보고 : 2023년 상반기 중 전략과제별 사업계획 진행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

바.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3년 2/4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결과를 보고

[결의안건]

가.자기주식 소각(안) :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보통주 3,846,808주) 소각의 건 결의

나.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안) : 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주당 100원)의 건 결의

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계획(안) : 그룹 BIS비율 제고를 위해 원화 1,500억원 이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계획의 건 결의

차)2023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3.08.10(목) 15:00~15:20

[안건 통지일 : 2023.07.21(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수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자금지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2023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수정 보고 : 이사회에 기 보고한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에 수정사항 발생함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

[결의안건]

가.자회사 자금지원(안) : 자회사(BNK투자증권)에 대한 1,000억원의 자금지원 결의

카)2023년도 제11차 (정기)이사회 : 2023.10.31(화) 10:00~11:40

[안건 통지일 : 2023.10.23(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자기주식 소각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회사 자금지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 가.2023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 그룹 당기순이익 6,570억원, ROE 8.86%, BIS총자본 비율 13.56%, 고정이하여신비율 0.58% 등 가결산 주요내용 보고
-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3년 3/4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결과 보고
- 마.자기주식 소각 결과 보고 : 2023년 9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소각 결과 보고
- 바.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결과 보고 : 2023년 9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중간배당 결과 보고
- 사.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 2023년 9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 아.자회사 자금지원 결과 보고 : 2023년 10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회사(BNK투자증권) 자금지원 결과 보고
- 자.자문위원 위촉 보고 : 당사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고

[결의안건]

- 가.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안)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및 해당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결의
- 나.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안)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따라 관련 내규 제정 및 개정의 건 결의
- 다.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안)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 (CEO 후보군 선정 및 운영실태 등)과 비상승계절차 명확화를 위한 일부 내용 변경의 건 결의

타)2023년도 제12차 (정기)이사회 : 2023.12.19(화) 10:00~10:20

[안건 통지일 : 2023.12.1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 기존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재무관리 업무)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재선임 결의

나.준법감시인 임면(안) : 기존 준법감시인의 중도사임에 따라 준법감시인 임면 결의

파)2023년도 제13차 (정기)이사회 : 2023.12.21(목) 10:00~11:40

[안건 통지일 : 2023.12.1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이사회 사무지원 조직의 책임자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회사채 발행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 가.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 2022년 제12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회사채 6,500억원 발행 결과 보고
- 나.경영진 임면 보고 : 경영진 신규 선임 5명, 연임 1명, 퇴임 3명에 대한 보고
- 다.이사회 사무지원 조직의 책임자 임면 보고 : 당사 이사회 사무지원 조직(이사회사무국) 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라.자문위원 위촉 보고 : 당사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결의안건]

- 가.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안) : 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및 재무계획(당기순이익 2.2조원, ROE 12%, BIS총자본비율 15.6%, 고정이하여신비율 0.5 이하 등) 승인
- 나.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안) : 2024년 그룹 경영방침 및 전략과제, 그룹 재무계획(당기순이익 8,500억원, ROE 7.98%, BIS총자본비율 14.00%, 고정이하여신비율 0.59% 등) 승인
- 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안) : 그룹 BIS비율 제고를 위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원화 2,000억원 이내) 발행 계획 결의
- 라.회사채 발행계획(안) : 차환 및 계열사 출자, 운영자금 등 목적으로 원화 회사채 3,000억원 발행 결의
- 마.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안) : 당사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회 지원부서 변경 반영 등 결의

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이사회 평가

당사의 이사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략제시 능력, 위기관리 대응 능력, 경영통제 및 감독의 효율성, 이사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이사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 전원과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관련 업무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됩니다.

당사는 2023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이사회 평가 결과는 202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이사회 등 참석률이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사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2)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위원 전원과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관련 업무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개요,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본 연차보고서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바.사외이사 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내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의거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17년 9월 27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제6차 이사회에서 최경수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

다. 선임기준

라. 활동내역 및 평가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되었으나, 법률 시행 이후 각 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나.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말 기준으로 위원장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및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시 보다 독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위원들은 본인의 후보 추천에 관한 안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의 건 결의에 따라 사외이사 전원(6명)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2023년 3월 제6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의 건 결의로 위원장 포함 총 4명으로 위원 변경이 있었으며, 2023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23.1.1~2023.3.17)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허진호	사외	위원장	2022.11.14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3.3.17~2023.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정영석	사외	위원장	2023.03.17	2024.3월 정기주총 시까지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이광주	사외	위원		

다.선임기준

1)후보 자격요건

당사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1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첨부(관련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2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

- 1.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 2.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또한, 최고경영자 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당사 정관 제3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1. 소극적 자격요건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적극적 자격요건

- 1)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 2) 직무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 3) 윤리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 4)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에서 구체화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 2개월 전까지 또는 임기 내 사임·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CEO 내부 후보군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외부 자문기관에 의해 추천된 외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평가-프리젠테이션 평가 - 면접 평가 등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세부 추천 절차는 본 보고서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 중으로, 사외이사 임기 도래 또는 결원 발생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2~3배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선정하고, 예비후보군 중 당사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3.임원후보추천위원회-마.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는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 검증 및 추천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3인 이상) 충족 시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원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공백 없는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사내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진 성과평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준에 의거 평가 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전년도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량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결의 안건 7건 및 보고 안건 1건이며, 결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중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2022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의하여 경영승계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3.1.19. 개최)에서 빈대인 후보자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해당 후보자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동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3차 및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수를 감안하여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회차별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3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1.12(목) 10:00~18:30

[안건 통지일 : 2023.01.04(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대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결과 보고 :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 검증 및 그 결과를 보고

[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안) : 2022년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및 면접 평가 실시 후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3명을 선정

나)2023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1.19(목) 09:50~12:40

[안건 통지일 : 2023.01.17(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 2023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평가 실시 후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다)2023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2.14(화) 16:00~16:20

[안건 통지일 : 2022.02.14(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기존 7개 전문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군 69명에서 지원부서 및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20명을 Pool-In하고, 퇴임 사외이사 1명을 Pool-Out하여 총 88명의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라)2023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2.17(금) 16:00~16:20

[안건 통지일 : 2023.02.17(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수를 감안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88명 중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8명(재선임 대상 2명 포함) 선정

마)2023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2.23(목) 11:20~11:40

[안건 통지일 : 2023.02.22(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주)}	찬성	찬성 ^{주)}	찬성	가결

주)본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8명을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4명(재선임 2명, 신규 선임 2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2명을 추천

바)2023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3.17(금) 11:39~11:42

[안건 통지일 : 2023.03.13(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정영석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정영석 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사)2023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7.24(월) 11:50~12:10

[안건 통지일 : 2023.07.18(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정영석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기존 7개 전문분야에 사외이사 후보군 88명에서 당사 퇴임 사외이사 3명 등 총 18명을 Pool-Out하여 7개 전문분야에 총 70명의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3)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023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절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마.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대표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빈 대 인

②출생연도 : 1960년

③출신학교 : 동래원예고등학교, 경성대 법학과, 경성대 대학원 법학석사

④경력

- 2017.09 (주)부산은행 은행장
- 2017.04 (주)부산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 2016.01 부산은행 부행장(미래채널본부)
- 2015.01 부산은행 부행장(신금융사업본부)
- 2014.01 부산은행 부행장보(경남영업본부)
- 2013.01 부산은행 본부장(북부지역본부)

(나)후보 제안자

빈대인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빈대인 후보자는 부산은행 은행장 재직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분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으며, 지역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탁월한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그룹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빈대인 후보는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압축, 심사 및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 8, § 31)에서 이사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당사에서 정하는 이사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본인 소명

○후보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 최고경영자로서 자질,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익성 등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 추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빈대인 후보자는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 후보

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결의한 이후 2022년 12월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총 3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류심사 평가,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평가, 심층면접 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1) 김병덕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김 병 덕

②출생연도 : 1962년

③출신학교 : 영등포고등학교, 텍사스대 오스틴교 경제학과, 미네소타대 경제학 석사/박사

④경력

- 2023.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9.03 KB생명보험(주) 사외이사
- 2019.01 한국연금학회 회장
- 2014.07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2008.08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現)
- 2003.08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나) 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김수희

- 2022.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1.03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 20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2020.03 BNK캐피탈(주) 사외이사
- 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②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2023년 2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김수희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최근 감사위원회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 전문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2023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금융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추가 발굴을 통해 2023년 2월 1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88 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 51), 지배구조내부규범 (§ 8, § 25)에서 사외이사과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금융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습니다.

③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당사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병덕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최경수 감사위원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 ①성명 : 최 경 수
- ②출생연도 : 1950년
- ③출신학교 :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 석사, 숭실대학교 경제학 박사

④경력

- 20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 2021.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 20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 20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 2003.12 조달청장
- 2002.02 재정경제부 세제실장(1급),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김수희

- 2022.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1.03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 20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2020.03 BNK캐피탈(주) 사외이사
- 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②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23년 2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김수희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 감사위원회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선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난 2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BNK금융그룹의 경영성과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2020년 당사 사외이사(문일재) 추천으로 2020년 2월 6일 제5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5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 51), 지배구조내부규범 (§ 8, § 25)에서 사외이사과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금융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본인 소명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당사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최경수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제5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금융 및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박우신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박 우 신

②출생연도 : 1957년

③출신학교 : 대전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④경력

- 2021.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4.02 (주)씨텍 대표이사
- 20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 20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 20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나) 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김수희

- 2022.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1.03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 20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2020.03 BNK캐피탈(주) 사외이사
- 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②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2023년 2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김수희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지난 1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경영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후보자의 탁월한 역량과 감사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2021년 당사 주요주주의 추천으로 2021년 2월 19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72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 51), 지배구조내부규범 (§ 8, § 25)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당사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우신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사외이사 후보

1)최경수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 ①성명 : 최 경 수
- ②출생연도 : 1950년
- ③출신학교 :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숭실대학교 경제학 박사
- ④경력

- 20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 2021.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 20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 20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 2003.12 조달청장
- 2002.02 재정경제부 세제실장(1급),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⑤ 사외이사 경력

㉔ 재임기간 : 2021.03.26 ~ 현재

㉕ 재임기간 중 출석률(2023.01.01~2023.12.31)

- 이사회 총 13회 중 13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5회 중 5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㉖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3.01.01~2023.12.31)

- 이사회 : 사내이사 후보 확정, 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자기주식 취득 승인,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 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2023년도 이사회 구성,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 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고문 위촉, 이사회 의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자기주식 소각, 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준법감시인 임면, 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2024년도(제14기)

- 경영계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회사채 발행계획,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등
 - 보수위원회 :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등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년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고도화 완료 및 적용(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사전검증 결과 포함) 등
 - 감사위원회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2024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 등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허진호

- 2019.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
- 20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 2008.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2003.04 (주)경남은행 사외이사
- 19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19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②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21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허진호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재경 분야 공직자 및 금융회사 CEO 경력을 보유한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고, 향후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2020년 당사 사외이사(문일재)의 추천으로 2020년 2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5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 포함되었습니다.

(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내부규범(§ 7, § 8),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금융/경제/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㉔전문성 : 제1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등 재경 관련 정부 부처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무사로서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금융/경제/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금융/경제/회계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㉕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세무법인 두리 고문을 겸직 중이나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2021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㉖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㉗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세무법인 두리 고문을 겸직하고 있으나,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23년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최경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제5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경제/경영/회계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5명(위원 6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박우신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 ①성명 : 박 우 신
- ②출생연도 : 1957년
- ③출신학교 : 대전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④경력
 - 20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4.02 (주)씨텍 대표이사
- 20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 20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 20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⑤ 사외이사 경력

㉔ 재임기간 : 2021.03.26 ~ 현재

㉕ 재임기간 중 출석률(2023.01.01~2023.12.31)

- 이사회 총 13회 중 12회 참석(참석률 92.3%)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㉖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3.01.01~2023.12.31)

이사회 : 사내이사 후보 확정, 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자기주식 취득 승인,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 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2023년도 이사회 구성,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고문 위촉, 이사회 의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별 위원 선임,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 책임자 임면, 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자기주식 소각, 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준법 감시인 임면, 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회사채 발행계획,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 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

- 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등
- 보수위원회 : 2022년도 경영진 장기/단기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 2023년도 경영진 장기/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 2022년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등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년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고도화 완료 및 적용(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사전검증 결과 포함) 등
 - 감사위원회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2024년도 감사 업무계획 수립 등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허진호

- 2019.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
- 20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 2008.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2003.04 (주)경남은행 사외이사
- 19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19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②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21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허진호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호남석유화학 및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주)씨텍의 대

표이사를 역임한 경영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1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 향후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 당사 주요주주 추천으로 2021년 2월 19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72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내부규범(§ 7, § 8),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경영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㉔전문성 : 후보자는 호남석유화학 및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씨텍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분야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경영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경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㉕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속법인이 없으며, 2021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㉖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경영 전문가로서 인품과 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망을 갖추고 있고,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㉗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당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본인 소명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우신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제5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5명(위원 6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이광주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이 광 주

②출생연도 : 1951년

③출신학교 : 연세대 경제학과, 美서던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④경력

- 2023.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7.03 부산은행 사외이사
- 2010.09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겸임) 교수
- 2010.06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사외이사
- 2007.04 한국은행 부총재보
- 2006.02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 2004.04 한국은행 국제국 국장

⑤사외이사 경력

㉔재임기간 : 2023.03.17 ~ 현재

㉕재임기간 중 출석률(2023.03.17~2023.12.31)

- 이사회 총 8회 중 8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회 중 2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㉖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3.03.17~2023.12.31)

- 이사회 : 이사회 의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자기주식 소각, 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준법감시인 임면, 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회사채 발행계획,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 보수위원회 :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신종 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등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 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 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 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 등

(나) 후보 제안자

① 인적사항 : 김수희

- 2022.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1.03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 20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2020.03 BNK캐피탈(주) 사외이사
- 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23년 3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김수희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한국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부총재보를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SC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경제학 교수 활동 경력 감안 시 경제와 금융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며, 과거 당 그룹 부산은행의 사외이사 경력 감안 시 당 그룹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경로

- 2023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경제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을 통해 2023년 2월 1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88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내부규범(§ 7, § 8),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 ㉔ 전문성 : 후보자는 한국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부총재보를 역임하였으며, SC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는 등 경제와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중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금융/경제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㉕ 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속법인이 없으며, 2023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㉖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역임한 자로, 높은 명망과 함께 윤리의식 및 책임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㉗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당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

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김병덕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김 병 덕

②출생연도 : 1962년

③출신학교 : 영등포고등학교, 텍사스대 오스틴교 경제학과, 미네소타대 경제학 석사/박사

④경력

- 2023.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9.03 KB생명보험(주) 사외이사
- 2019.01 한국연금학회 회장
- 2014.07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2008.08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現)
- 2003.08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⑤사외이사 경력

㉠재임기간 : 2023.03.17 ~ 현재

㉡재임기간 중 출석률(2023.03.17~2023.12.31)

- 이사회 총 8회 중 8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㉔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3.03.17~2023.12.31)

- 이사회 : 사내이사 후보 확정, 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자기주식 취득 승인,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 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2023년도 이사회 구성,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 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고문 위촉, 이사회 의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자기주식 소각, 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준법감시인 임면, 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회사채 발행계획,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 보수위원회 :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년 하반기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등
- 감사위원회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2024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 등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 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 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 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

(나) 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김수희

- 2022.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1.03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 20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2020.03 BNK캐피탈(주) 사외이사
- 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는 2023년 3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김수희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 및 경제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금융 및 경제분야 전문가로,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및 한국연금학회장 경력과 KB생명보험 사외이사 경력 등 감안 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경로

- 2023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금융분야 사외이사 발굴을 통해 2023년 2월 1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88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내부규범(§ 7, § 8),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 ㉔전문성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KB생명보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중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금융/경제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④ 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④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높은 명망과 함께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④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23년 중 당사 사외이사 직을 역임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불참 없이 100% 참석한 점 등 감안할 때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병덕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5)정영석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정 영 석

②출생연도 : 1963년

③출신학교 :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한국해양대 법학 석사/박사

④경력

- 2023.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19.02 법제처 법제자문관(입법자문관)(現)
- 2018.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 2014.09 한국해법학회 부회장(現)
- 2005.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1999.03 한국해양대 교수(現)

⑤사외이사 경력

㉠재임기간 : 2023.03.17 ~ 현재

㉡재임기간 중 출석률(2023.03.17~2023.12.31)

- 이사회 총 8회 중 8회 참석(참석률 100%)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회 중 2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3.03.17~2023.12.31)

- 이사회 : 사내이사 후보 확정, 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자기주식 취득 승인,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 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2023년도 이사회 구성,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 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고문 위촉, 이사회 의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자기주식 소각, 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준법감시인 임면, 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 회사채 발행계획, 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 등

-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 보수위원회 :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년 하반기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신종 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등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 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 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 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김수희

- 2022.03 (주)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21.03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 2021.03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 2020.03 BNK캐피탈(주) 사외이사
- 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②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는 2023년 3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김수희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한국해양대에서 법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금융감독원 및 법제처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해법 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점 감안 시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2023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금융분야 사외이사 발굴을 통해 2023년 2월 1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88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 37), 지배구조내부규범(§ 7, § 8),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한국해양대 법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 ㉔전문성 : 한국해양대 법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중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금융/경제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㉕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해양대는 국립대학교로서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2023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㉔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높은 명망과 함께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㉕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한국해양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나,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23년 중 당사 사외이사직을 역임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불참 없이 100% 참석한 점 등 감안할 때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영석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6)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이 연임하였으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

토 결과 연임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 기준)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주1)}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 ^{주2)}	평가 결과
유정준	5년(18.3월~23.3월)	부	100%	탁월(S)
허진호	4년(19.3월~23.3월)	부	100%	탁월(S)
이대섭	2년(21.3월~23.3월)	부	100%	탁월(S)
최경수	2년(21.3월~23.3월)	여	100%	탁월(S)
박우신	2년(21.3월~23.3월)	여	97.4%	탁월(S)

주1)재임기간 : 최초 선임 이후 2023.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간

주2)이사회등 출석률 : 2023.1월 ~ 2023.12월

7)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최경수 사외이사는 재정 분야 공직자 및 금융회사 CEO 경력을 보유한 금융 및 경제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간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당 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6.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신 사외이사는 호남석유화학 및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주)씨텍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분야 전문가로, 2021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2022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경

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며 경영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 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지역금융그룹의 특성 상 지역 내에서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원부서의 후보군 발굴 활동, 사외이사 추천과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추천, 외부 자문기관 추천 등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군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였고, 법령의 개정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내규 등을 개정하여 주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원칙으로 위원회는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심사하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지원부서의 후보군 발굴 활동 외에 주주, 사외이사,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후보군 69명중 당 그룹 퇴임 사외이사 1명을 후보군에서 제외(Pool-Out)하고, 사외이사 추천 및 지원부서 발굴을 통해 예비 자격검증을 거친 사외이사 후보군 20명을 추가(Pool-In)하여, 총 88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군 88명 중 당 그룹 퇴임 사외이사와 당사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된 이후 장기간 경과한 후보자 및 타 기업체 대표이사 선임 등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 및 적합도가 낮은 후보 등 총 18명을 후보군에서 제외(Pool-Out)하고, 총 70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후보군 현황

①1차 결의일자 : 2022년 2월 1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문 분야별 현황]

구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소비자 보호	재무/ 회계	정보 기술	합계
후보군 수	24명	13명	13명	15명	4명	16명	3명	88명
구성비	27%	15%	15%	17%	5%	18%	3%	100%

[추천 경로별 현황]

분야	주주	사외이사	지원부서	외부 자문기관	합계
후보군 수	1명	14명	53명	20명	88명
구성비	1%	16%	60%	23%	100%

②2차 결의일자 : 2023년 7월 24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문 분야별 현황]

구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소비자 보호	재무/ 회계	정보 기술	합계
후보군 수	20명	10명	8명	12명	4명	13명	3명	70명
구성비	29%	14%	11%	17%	6%	19%	4%	100%

[추천 경로별 현황]

분야	주주	사외이사	지원부서	외부 자문기관	합계
후보군 수	1명	14명	37명	18명	70명
구성비	1%	20%	53%	26%	100%

8)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23년 2월 1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고 2023년 2월 17일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2월 23일 개최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을 결의한 후 동일자에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내용 및 예비후보군 선정 내용,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고, 2023년 7월 26일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7)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 현황

①부서명 : 전략기획부

②지원부서 인원 구성 : 부장 1명, 부원 2명

(나)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23.02.1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검토 보고
2023.02.17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검토 보고
2022.02.23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자격검증 자료 제공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참고사항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관련 참고사항 보고
2023.07.24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검토 보고

(4)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당사는 당해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자격검증 및 추천하였으며,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사외이사 활동내역

나.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다.사외이사 교육·연수

라.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기부금 등 지원내역

바.사외이사 평가

사.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아.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자.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차.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① 2023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 2023.01.19(목) 12:50~13: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 사내이사 후보 확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23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 2023.02.02(목) 10:50~12: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2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 20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 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결과 및		특이의견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계획 수립											
사.2022년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계획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제12기(2022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기주식 취득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다.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콜옵션 행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라.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마.2023년도 이사회 구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바.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대상 추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③2023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3.02.07(화) 10:00~10: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④2023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3.02.23(목) 11:40~12: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2023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23.03.10(금) 10:00~10: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고문 위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2023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3.03.17(금) 11:20~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안감찬	이두호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대표이사 회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으로 의결권 제한

주2)본인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으로 의결권 제한

⑦2023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23.03.27(월) 10:00~10: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장영석	반대인	안갑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가결
다.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⑧2023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3.04.27(목) 12:00~13: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반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2023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자회사 자금지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중장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비상임이사 중도 사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차.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지주 사무공간 임차계약 갱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⑨2023년도 제9차 (정기)이사회 : 2023.07.26(수) 15:50~17: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2023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상반기 사업계획 진행 상황 점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4.결의안건								
가.자기주식 소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㉑2023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3.08.10(금) 15:00~15: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반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수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자금지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㉒2023년도 제11차 (정기)이사회 : 2023.10.31(화) 10:00~11: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반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자기주식 소각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2023 사업연도 중간배당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사.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회사 자금지원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내 임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제정 및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⑫2023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 2023.12.19(화) 10:00~10: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⑬2023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 : 2023.12.21(목) 10:00~11: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이사회 사무지원 조직의 책임자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라.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VISION 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4년도(제14기)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회사채 발행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지배구조 관련 내규 등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임원 후보추천위원회

①2023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1.12(목) 10:00~18: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접수
가.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2023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1.19(화) 09:50~12: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2023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2.14(화) 16:00~16: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2023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2.17(금) 16:00~16: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2023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2.23(목) 11:20~11: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주)}	찬성	찬성 ^{주)}	찬성	가결
----------------------------	----	----	------------------	----	------------------	----	----

주)본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⑥2023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3.17(금) 11:39~11:4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정영석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⑦2023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07.24(월) 11:50~12: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정영석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위원회

①2023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3.01.31(화) 15:50~16: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2023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3.02.23(목) 10:00~10:5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회계감사 계약체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2023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3.03.17(금) 11:36~11:3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2023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3.04.27(목) 10:50~11: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1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⑤2023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3.07.05(수) 16:00~17:4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BNK저축은행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부결
나.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2023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3.07.24(월) 15:40~16: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2023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2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다.BNK캐피탈 부문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㉗2023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3.10.30(월) 11:00~11:5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3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자회사 조치요구사항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3년 상반기 리스크 관리체계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㉘2023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3.12.18(월) 10:00~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잠정)에 대한 향후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㉙2023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3.12.20(수) 15:20~16: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4년도 감사보조기구(감사부) 예산 편성(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자회사 중요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BNK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2024년도 감사 업무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①2023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1.31(화) 15:00~15: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 상반기 통합위험상황 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시스템 고도화 완료 및 적용(안)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사전검증 결과 포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2023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3.17(금) 11:33~11:3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③202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4.27(목) 10:00~10:5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3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④2023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7.24(월) 14:00~15: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부동산PF 사후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비은행계열사(캐피탈, 투자증권) 유동성 현황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공동 투자 해외부동산 현황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바젤 거액익스포저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23년도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2023년도 그룹 신용 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 하반기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2023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9.21(목) 13:30~13: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2023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10.30(월) 15:35~16: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프로젝트 종료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3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4년 감독규제 시행 예정 주요 내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2년도 소매부도율(PD) 정기검증 결과 정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⑦2023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12.20(수) 16:00~17: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新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 도입" 사업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3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①2023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3.02.23(목) 10:50~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 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도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2023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3.03.17(금) 11:30~11: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③2023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3.04.27(목) 11:30~11:4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1.위원 성명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2023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 2023.10.30(월) 15:50~16: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1.위원 성명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이사회운영위원회

①2023년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03.17(금) 11:45~11:5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②2023년도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06.29(목) 15:00~15: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③2023년도 제3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10.30(월) 14:00~14: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재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사)ESG위원회

①2023년도 제1차 ESG위원회 : 2023.03.17(금) 11:42~11:4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②2023년도 제2차 ESG위원회 : 2023.04.27(목) 11:45~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결의안건 없음								

③2023년도 제3차 ESG위원회 : 2023.07.26(수) 15:30~15:5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에 대한 의견								
결의안건 없음								

④2023년도 제4차 ESG위원회 : 2023.10.31(화) 11:40~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아)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위원회

① 2023년도 제1차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위원회 : 2023.11.13(월) 10:20~1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3. 결의안건					
가. 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23년도 제2차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위원회 : 2023.11.20(월) 10:00~10:5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3. 결의안건					
가. 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2023년도 제3차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위원회 : 2023.11.24(금) 15:00~16: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2023년도 제4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05(화) 16:30~16:5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2023년도 제5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08(금) 15:00~17: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2023년도 제6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15(금) 10:30~11: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CEO 중도사임서 접수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개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⑦2023년도 제7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15(금) 11:00~11: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⑧2023년도 제8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20(수) 17:00~17: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⑨2023년도 제9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27(수) 14:00~15: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최경수 활동내역

최경수 사외이사는 2023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9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 당사의 오랜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적극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BNK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비은행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이자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관련 여신 및 PF등 잠재부실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경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40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박우신 활동내역

박우신 사외이사는 2023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2회 참석(개인일정으로 부득이 1회 불참)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보수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9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수익 포트폴리오 구축 등 경영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보이며, 안정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핵심예금 증대와 퇴직연금 분야에 대한 영업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자 신고 제도를 통해 금융사고가 조기에 발견되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BNK헬프라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우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403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사외이사 김수희 활동내역

김수희 사외이사는 2023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보수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감사위원회 9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계열사의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주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주에서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수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4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라)사외이사 이광주 활동내역

이광주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신규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ESG위원회 4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9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국/내외 풍부한 경제 및 금융업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23년 10월 신설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자회사 CEO 경영승계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타사 대비 낮은 당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경우에도 자본비율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높은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고객정보 및 관련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광주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3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마)사외이사 김병덕 활동내역

김병덕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신규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감사위원회 7회, ESG위원회 4회,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 9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과의 적극적인 소통, 논의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주도하였습니다.

BNK가 지속성장 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수익성·건전성 3가지가 특정 분야로 쏠림 없이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며, 최근 PF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별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총당금 관련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업계 환경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표 등을 바탕으로 당사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병덕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41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바)사외이사 정영석 활동내역

정영석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신규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8회 참석하였으며, 이사회운영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ESG위원회 4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9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 제시의 필요성과 계열사간 비용 시너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영석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3년 중 총 3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사외이사 활동내역 요약(2023.1.1~2023.12.31)

(단위 : 개최/참여횟수)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시간)
			이사회 운영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보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회		ESG 위원회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최경수	13	13	3	3	5	5	3	3	1	1	9	9	4	4	-	-	406
박우신	13	12	3	3	7	7	1	1	1	1	9	9	4	4	-	-	403
김수희	13	13	3	3	7	7	1	1	7	7	9	9	4	4	-	-	466
이광주	8	8	3	3	2	2	3	3	6	6	-	-	4	4	9	9	366
김병덕	8	8	3	3	-	-	3	3	6	6	7	7	4	4	9	9	416
정영석	8	8	3	3	2	2	3	3	6	6	-	-	4	4	9	9	366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그룹 차원에서 일괄 부보하고 있으며,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입니다. 방어비용이란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조사, 합의 또는 소송 시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배상책임 발생 시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의 20% 이상으로 하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기간 중 재직한 지주 및 자회사 소속 전체 임원이며, 그룹의 총 보상한도는 150억원, 1청구 당 보상한도액도 150억원입니다.

다.2023년도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비고
최초 선임일	21.3.26	21.3.26	22.3.25	23.3.17	23.3.17	23.3.17	
1.교육·연수 실시 내역							
(1)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2.02(목)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2023년 동남권 수출 전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선임 전)	(선임 전)	(선임 전)	1시간
(2)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3.09(목)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건설 부동산 시장 현황과 지역경제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선임 전)	(선임 전)	(선임 전)	1시간
(3)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4.03(월) ~ 12.31(일)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주관] SERI CEO 동영상 콘텐츠 수강, 오프라인 행사 자율 참여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0시간
(4)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4.03(월) 내용 : 신입 사외이사 대상 그룹 현황 설명자료 제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5)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5.22(월) 내용 : 그룹 부동산PF 사후관리 현황 및 SVB 사태로 본 당 그룹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6)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6.29(목) 내용 : Chat GDP와 금융의 미래 변화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7)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6.20(화) ~ 07.18(화) 내용 :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	-	-	참석	-	10시간
(8)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7.26(수) ~ 07.29(토) 내용 :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년 KSA 하계 CEO 포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9시간
(9)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9.05(화) 내용 : [BNK연구보고서] 금융권의 비금융산업 진출과 당사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0)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10.31(화) 내용 : [BNK연구보고서] 퇴직연금사업 성장 방안 연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1)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12.04(월) 내용 : [BNK연구보고서] 기업 금융의 혁신 트렌드와 당사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사외이사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비고
최초 선임일	21.3.26	21.3.26	22.3.25	23.3.17	23.3.17	23.3.17	
(1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2.28(목) ▪ 내용 : [BNK연구보고서] 2024년 경제 및 금융산업 전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2023년 교육 시간 ^{주1)}	39시간	29시간	29시간	29시간	39시간	29시간	-
3.누적 교육 시간 ^{주2)}	104시간	94시간	48시간	29시간	39시간	29시간	-

주1) 2023.1.1~2023.12.31 기간 중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주2) 사외이사 최초 선임 이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최경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최경수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최경수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 전문성 : 최경수 사외이사는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정부부처에 오랜 기간 근무하는 등 경제 관련 폭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 최경수 사외이사가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인 세무법인 두리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윤리성, 책임성 : 최경수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써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최경수 사외이사는 2021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소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경제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박우신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우신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

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박우신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 경영진 및 (주)씨텍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 경영진 및 (주)씨텍의 CEO로 재임한 경험이 있고, 전문경영인으로서 높은 사회적 평판과 신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2021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소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사외이사 김수희

가)소극적 자격요건

김수희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수희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2018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현재는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로 활동 중인 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②직무공정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부산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나 부산은행은 당사의 자회사로서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재직한 지어소프트 및 현재 대외법무이사로 재직중인 (주)오아시스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변호사로서 BNK캐피탈과 부산은행 사외이사 경력을 통해 당 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

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2022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소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이광주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광주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수희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이광주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역임하였고, 1989년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및 한국은행 퇴임(2010년) 후 5년 이상 연세대 특임(겸임)교수 역임 경력을 보유한 경제분야 전문가입니다.

②직무공정성 : 이광주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이광주 사외이사는 부산은행 사외이사 경력을 통해 당 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이광주 사외이사는 2023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전사건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기대

5)사외이사 김병덕

가)소극적 자격요건

김병덕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수희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김병덕 사외이사는 2008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분야 전문가입니다.

②직무공정성 : 김병덕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김병덕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및 한국연금학회회장 경력과 타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김병덕 사외이사는 2023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전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소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기대

6) 사외이사 정영석

가) 소극적 자격요건

정영석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 37)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수희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정영석 사외이사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 취득 후 1999년부터 동 대학교에서 법률 관련 교수로 활동 중인 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②직무공정성 : 정영석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한국해양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의거 소속 대학교로부터 당사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으며,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정영석 사외이사는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및 법제처 법제자문위원관 등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정영석 사외이사는 2023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전사건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법률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기대

마.기부금 등 지원내역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최경수			해당사항 없음		
박우신			해당사항 없음		
김수희			해당사항 없음		
이광주			해당사항 없음		
김병덕			해당사항 없음		
정영석			해당사항 없음		

바.사외이사 평가

1)평가 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이내이며, 연임 시 1년 이내로 제한하
되, 내·외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초 내부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평
가기관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사회 결의로 확정하도

특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평가기관에서 실시하고 202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2)내부평가

가)내부평가 개요

①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평가 기준 :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이사의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및 평가결과를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요약>

구분	정성평가			정량평가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평가종류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본인	본인 제외한 이사 전원 ^{주)}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항목	○사외이사 평가표 주요 항목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평가비중	5%	60%	20%	5%	10%

주)사내이사 및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제외

③평가 절차 : 이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무기명)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적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하며, 자기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상호평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무기명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3년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평가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2022년 12월 제13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한 사외이사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23년 사외이사 활동 평가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사외이사 평가 총론 및 각 사외이사별 평가내용은 아래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바.사외이사 평가 - 3)외부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외부평가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문기관은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과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이사회 전반에 대한 응답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외부평가 개요

- ①평가 주체 : 사외이사 평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당사와 각종 자문계약 체결 이력이 없어 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평가 기준 : 사외이사 평가 기준은 내부 평가기준을 활용하며, 외부 평가기관은 내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③평가 절차 : 외부 평가기관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평가, 상호평가 및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정량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사외이사 평가등급을 산출합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최근 2년 이내 당사와 자문계약 체결 이력이 없는 외부평가기관에 사외이사 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사전에 설정된 외부평가 프로세스와 평가요소, 평가방법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총론

2023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결과는 전원 S등급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사회 지원부서는 이사회 결정사항과 사외이사 개인 의견의 반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사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②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최종 평가등급	
최경수	탁월	탁월	탁월	S	-
박우신	탁월	탁월	탁월	S	-
김수희	탁월	탁월	탁월	S	-
이광주	탁월	탁월	탁월	S	-
김병덕	탁월	탁월	탁월	S	-
정영석	탁월	탁월	탁월	S	-

③사외이사 최경수 : 당사의 오랜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직을 수행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업계 환경과 BNK의 지역적 특수성에 높은 이해도를 지녔으며, 모든 회의에

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이사회 운영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40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㉔사외이사 박우신 : 경영 분야 전문가로 재무 및 자금운용 관련 안건에서 뛰어난 문제제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 수익 포트폴리오 구축 등 경영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보이며, 결산 안건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전략적 방향제시와 유관부서의 업무 및 보고체계 개선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97.4%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403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㉕사외이사 김수희 : 활발한 토론 참여와 발언 유도를 통해 이사회 의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법률과 제도 변화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며, 내부통제체계에 대해서 이사회 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4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㉖사외이사 이광주 :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서 경제정책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지적하고, 국내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대응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3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㉗사외이사 김병덕 : 신임 사외이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現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금융제도 등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며, 업계 환경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표에 대한 예리한 해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

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이사록 검토 등에 총 41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④사외이사 정영석 : 부울경 지역에 대한 다양한 배경정보를 제공하여, 이사회가 BNK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주주 및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하며,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이사록 검토 등에 총 3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부득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 3월 제6차 이사회에서 최경수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2023년 중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2)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이사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및 발송,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기획부 내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인력은 2023년말 현재 3명입니다.

2023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업무수행으로 사외이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 및 E-MAIL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외이사 워크숍 관련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교육·연수를 위해 그룹 현황 및 당사 연구소 발간 정기 간행물 등을 발송 하였고, 대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사외이사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하여 임원보수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수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기타 편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외이사 최경수

가)재직기간 : 2021.03.26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8,298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1,548만원	이사회 의장(9개월),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25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22회, 간담회 등 5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300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2) 사외이사 박우신

가) 재직기간 : 2021.03.26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30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20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21회, 간담회 등 5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298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298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3) 사외이사 김수희

가) 재직기간 : 2022.03.25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37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직무수당	600만원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27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23회, 간담회 등 4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97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97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4) 사외이사 이광주

가) 재직기간 : 2023.03.17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841만원	
기본급	4,347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474만원	위원장(9개월)
기타수당	1,02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8회, 간담회 등 4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5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50만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5) 사외이사 김병덕

가) 재직기간 : 2023.03.17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841만원	
기본급	4,347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474만원	위원장(9개월)

기타수당	1,12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20회, 간담회 등 4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15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8만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6) 사외이사 정영석

가) 재직기간 : 2023.03.17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841만원	
기본급	4,347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474만원	위원장(9개월)
기타수당	1,02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8회, 간담회 등 4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30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7) 前 사외이사 유정준

가) 재직기간 : 2018.03.23 ~ 2023.03.1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275만원	

기본급	1,375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450만원	의장(3개월), 위원장(3개월)
기타수당	45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9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587만원	공로품 증정

8)前 사외이사 허진호

가)재직기간 : 2019.03.28 ~ 2023.03.17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1,975만원	
기본급	1,375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150만원	위원장(3개월)
기타수당	45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9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587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587만원	공로품 증정

9)前 사외이사 이태섭

가)재직기간 : 2021.03.26 ~ 2023.03.17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3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1,975만원	
기본급	1,375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150만원	위원장(3개월)
기타수당	45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9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587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587만원	공로품 증정

자.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23년 중 당사는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차.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정기영 (前)	18.03.23	22.03.25	48개월	운영위(18.3월~22.3월) 임추위(18.3월~22.3월) 감사위(18.3월~20.3월) 리스크위(18.3월~21.3월) 보수위(21.3월~22.3월) ESG위(21.3월~22.3월)	감사위원장 (18.3월~19.3월) 임추위원장 (19.3월~20.3월) 이사회 의장 (20.3월~22.3월) 운영위원장 (20.3월~22.3월)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유정준 (前)	18.03.23	23.03.17	60개월	운영위(18.3월~23.3월) 임추위(18.3월~23.3월) 감사위(18.3월~22.3월) 보수위(18.3월~19.3월) /(20.3월~22.3월) 리스크위(22.3월~23.3월) ESG위(21.3월~23.3월)	보수위원장 (18.3월~19.3월) 감사위원장 (19.3월~21.3월) 보수위원장 (21.3월~22.3월) 이사회 의장 (22.3월~23.3월) 운영위원장 (22.3월~23.3월)	신한회계법인 회계사(現) 한국증권업협회 비상근감사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손광익 (前)	18.03.23	21.03.26	36개월	임추위(18.3월~19.3월) 리스크위(18.3월~21.3월) 보수위(18.3월~20.3월) 운영위(20.3월~21.3월) 감사위(20.3월~21.3월)	리스크위원장 (20.3월~21.3월)	한국면세연구원 회장(現) (주)알펜시아 대표이사 롯데쇼핑(주) 시네마사업본부
허진호 (前)	19.03.28	23.03.17	48개월	임추위(19.3월~20.3월) /(21.3월~23.3월) 감사위(19.3월~21.3월) 리스크위(19.3월~21.3월) 보수위(20.3월~21.3월) /(22.3월~23.3월) 운영위(21.3월~23.3월) ESG위(21.3월~23.3월)	ESG위원장 (21.3월~22.3월) 보수위원장 (22.3월~22.7월) 임추위원장 (22.7월~23.3월)	중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창록 (前)	20.03.20	23.3월 정기주총 주)	26개월	임추위(20.3월~21.3월) 운영위(21.3월~22.5월) 리스크위(20.3월~22.5월) 보수위(20.3월~22.3월) ESG위(21.3월~22.5월)	리스크위원장 (21.3월~22.3월) ESG위원장 (22.3월~22.5월)	한국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재정경제부 관리관
이태섭 (前)	21.03.26	23.03.17	24개월	운영위(21.3월~23.3월) 리스크위(21.3월~22.3월) 임추위(21.3월~23.3월) 감사위(21.3월~23.3월) ESG위(21.3월~23.3월) 보수위(22.3월~23.3월)	임추위원장 (21.3월~22.7월) ESG위원장 (22.7월~23.3월)	경성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하나은행 본부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최경수 (現)	21.03.26	24.3월 정기주총	33개월	운영위(21.3월~현재) 리스크위(21.3월~23.3월) 임추위(21.3월~22.3월) /(22.11월~23.3월) 감사위(21.3월~현재) ESG위(21.3월~현재) 보수위(23.3월~현재)	감사위원장 (21.3월~22.3월) 리스크위원장 (22.3월~23.3월) 이사회 의장 (23.3월~현재) 운영위원장 (23.3월~현재)	세무법인두리 고문(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대증권 대표이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박우신 (現)	21.03.26	24.3월 정기주총	33개월	리스크위(21.3월~23.3월) 감사위(21.3월~현재) 보수위(21.3월~23.3월) ESG위(21.3월~현재) 운영위(22.3월~현재) 임추위(22.11월~현재)	감사위원장 (22.3월~23.3월) ESG위원장 (23.3월~현재)	(주)씨텍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부문장
김수희 (現)	22.03.25	24.3월 정기주총	21개월	운영위(22.7월~현재) 리스크위(22.3월~현재) 임추위(22.3월~현재) 감사위(22.3월~현재) 보수위(22.3월~23.3월) ESG위(22.3월~현재)	보수위원장 (22.7월~23.3월) 리스크위원장 (23.3월~현재)	(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이광주 (現)	23.03.17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운영위(23.3월~현재) 보수위(23.3월~현재) 리스크위(23.3월~현재) 임추위(23.3월~현재) ESG위(23.3월~현재) 자추위(23.3월~현재)	보수위원장 (23.3월~현재) 자추위원장 (23.3월~현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SC금융저주 및 SC제일은행 사외이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병덕 (現)	23.03.17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운영위(23.3월~현재) 보수위(23.3월~현재) 리스크위(23.3월~현재) 감사위(23.3월~현재) ESG위(23.3월~현재) 자추위(23.3월~현재)	감사위원장 (23.3월~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KB생명보험 사외이사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정영석 (現)	23.03.17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운영위(23.3월~현재) 보수위(23.3월~현재) 리스크위(23.3월~현재) 임추위(23.3월~현재) ESG위(23.3월~현재) 자추위(23.3월~현재)	임추위원장 (23.3월~현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제지원관

주)김창록 이사 : 임기만료일 이전 중도 사임(2022.05.23)

※상기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이사회운영위원회 / 리스크위: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수위: 보수위원회
/ 임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 감사위원회 / ESG위 : ESG위원회
/ 자추위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나.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다.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라.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마.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바.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5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의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절차 등의 체계적 구축 및 적정성 점검을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는 일부 자회사의 CEO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변경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최고경영자의 사임 시 비상승계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매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세부 내용 및 승계 절차, 후보군 관리 현황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첨부10.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참조]

나.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일반

(가)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당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령(지배구조법 §5 및 동법 시행령 §7)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배구조법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등 후보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시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후보군 10명을 선정하고 소극적 자격요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경영관리 역량 강화, 대외교섭 능력 강화, 경영기법 습득으로 분류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경영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시기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 사임 또는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기 중 유고 사유 발생 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개시토록 하며,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개시하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최종후보자 추천 절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써 개시되며,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후 기존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부 후보군을 CEO 후보군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그룹 경영이념 및 가치의 실현 가능성, 전문성 및 경험, 대외평판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평가를 통해 1차 후보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외부 평판조회 및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 등으로 2차 후보군으로 축소한 후,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비전 제시능력,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의식 등 최고경영자 자질에 대한 심층 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확정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마)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상 총 소요일정은 약 70일 내외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상승계 계획에 따라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임시 CEO로서 권한 대행에 맡아 신속히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9조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선정된 CEO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 추천 절차는 원칙적으로 ‘(1)일반’의 절차와 동일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상 소요일정이 총 70일 내외로 산정되어 있으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일부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어 비상승계 절차 진행 시에는 일반적인 승계 절

차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계획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11월 중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은 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2022년 11월 제 1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2년 12월 정성재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소극적 요건

(가)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평가

2023년 1월 19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이사회에서 당사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확정된 빈대인 후보는 지배구조법 등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가)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2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4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등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 금융산업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 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평 등이 양호한 자

(나)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2년 11월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 평가, 외부 평판조회, 심층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고 법령 및 내·외 규상의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2023년 1월 19일 빈대인 후보자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는 1988년 부산은행 입행 후 2013년 동행 영업본부장, 2014년 동행 경남영업본부장, 2015년 동행 신금융사업본부장 및 2016년 동행 미래채널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이후 2017년 4월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선임 및 2017년 9월 은행장 취임 이후 은행장 경영공백에 따른 조직의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 위기 관리 역량을 보여주었고, 디지털 부문 담당 임원 재임 시절부터 지역은행 최초의 모바일뱅크 출시 및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과 창구업무 페이퍼리스 추진 등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분야 전문성과 디지털전략 실행 경험 뿐만 아니라, 지역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룹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여 법률적 자격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김지완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시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 청구를 결의하였으며, 동일자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2022년 12월 법원에서 정성재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시까지 정성재 일시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를 담당하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2022년 12월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내부 후보군 9명과 외부 자문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후보군 9명 등 총 18명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지배구조법 §5 및 동법 시행령 §7)에 의거 임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며, 외부 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후보군 평판조회를 실시하여 전문성 및 리더십, 소통 능력, 혁신 선도 능력, 인성 및 윤리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1차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평가를 통해 2차 후보군 3명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후보군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빈대인 후보자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빈대인 후보자는 2023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최종후보자 확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67일 이었습니다.

2)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 현황>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2.11.1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안)	제11차 이사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안)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11.1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12.13	최고경영자 후보군 확정(안)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12.22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안)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01.12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안)	(2023년)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결과 보고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01.19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사내이사 후보 확정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이사회

마.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1)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후보군 확정,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을 통한 최종 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선정하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 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시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후보군 10명을 대상으로 소극적 자격요건을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중 기존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경영승계절차 개시 결정 후 기존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내부 후보군 9명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외부 후보군 9명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심사를 거쳐 압축한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CEO 자격요건을 점검하였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보고일자 : 2023년 10월 31일 제11차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10명 ^{주1)}	100%	
외부	금융회사	-	-	
	비금융회사	-	-	
	공공기관	-	-	
	기타	-	-	
합계		10명	100%	

주1)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의거 내부 임원으로 구성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최고경영자	-	-	
이사회	-	-	
주주	-	-	
외부기관	-	-	
기타	10명 ^{주1)}	100%	
합계	10명	100%	

주1)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바.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점검도 해당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최고경영자의 사임 시 비상승계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사.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이사회사무국을 전담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지원부서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 부서명 : 이사회사무국
- 직원수 : 총 3명(국장 1명, 직원 2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3.01.12	대표이사 회장 2차 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2023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01.19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0.3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적정성 점검 업무 실무 지원	2023년 제11차 이사회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라. 감사보조조직 등



6 |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해 BNK금융그룹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정관 § 52, 감사위원회규정 § 3)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재무전문가,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전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위원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전 일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 412, 지배구조법 § 20 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 402)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2차 감사위원회(2월23일 개최)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22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제4차 감사위원회(4월27일 개최)에서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2023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2차 감사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은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를 실시한 결과 BNK 금융지주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반영 왜곡표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중대한 취약점 및 유의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7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착수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2023년 제7차 감사위원회(10월30일 개최)에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전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음을 보고 받았으며, 사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고려사항으로 기말 이전까지 보완 및 운영평가 검토를 통해 의견 표명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 10 ④)

당사는 2020년도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19.10.14 사전통지, '19.11.12 본통지)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지정 과정 및 내용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계약기간이 2022년말 만료되어,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10월27일 개최)에서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2023년~2025년 회계연도 지주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부터 그 간의 외부감사업무 실적 및 수행능력,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각 제안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 활동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 11) 평가는 외부감사인이 회계 감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계획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외부감사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합니다.(2022년도 외부감사인 활동의 적정성 평가는 2023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실시)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계약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으며, 동 계약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아닌지, 그리고 이해상충 소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감사업무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감사업무 담당임원을 선임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하도록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감사업무 담당임원 및 감사보조기구(검사부)를 통하여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 14)

이는 감사업무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적정하게 실행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로는 ①금융회사가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②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④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1분기 감사활동 결과, 2023년 7월 24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2분기 감사활동 결과, 2023년 10월 30일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3분기 감사활동 결과, 를 보고하고, 2023년 12월 20일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2024년 2월 2일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4분기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 입니다.

(라)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감사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47조의3~4)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서류와 외부감사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202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적정하였음을 2024년 3월 개최되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기타

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1차 감사위원회(2월 2일 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

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12월 20일 개최)에서 “2024년도 감사업무계획 수립” 결의안건과 관련하여 검사 기본방향을 『선제적·실질적 검사를 통한 그룹 컨트론타워 역할 제고』로 확정된 후, “자회사 업무검사, 특별검사, 검사 인력 교류 활성화” 등 중점 추진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도에는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상속 증여준비와 절세전략(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주관)”, “2024년 국내외 주요 이슈와 경제전망(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주관)” 등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다수의 대외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지원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 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비고
2023.08.25.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박우신, 김수희	상속 증여준비와 절세전략 [강사 : 문창용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2023.10.23.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최경수	2024년 국내외 주요 이슈와 경제 전망 [강사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나.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김병덕)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김병덕 사외이사가 현재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회계(재무)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구성원

(2023.1.1~2023.3.17)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우신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4.3월 정기주총시 까지
최경수	사외	위원	2021.03.26	
김수희	사외	위원	2022.03.25	
이태섭	사외	위원	2021.03.26	2023.3월 정기주총시 까지

주) 회계·재무 전문가 : 최경수 사외이사(국가기관에서 재무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 세무사)

(2023.3.18~2023.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병덕	사외	위원장	2023.03.17	2025.3월 정기주총시 까지
최경수	사외	위원	2021.03.26	2024.3월 정기주총시 까지
박우신	사외	위원	2021.03.26	
김수희	사외	위원	2022.03.25	

주) 회계·재무 전문가 : 최경수 사외이사(국가기관에서 재무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 세무사)

다.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9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7건, 심의안건 6건, 보고안건 17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의 참석률은 100%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상정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설명회에서의 감사위원 요청사항 또는 수정사항 등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등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 계약체결 결과 보고”,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 “자회사 중요사항 보고” 등 주요 이슈사항 대한 보고안건 상정을 통해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선제적·예방적·적극적 내부통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3.01.31(화) 15:50~16:20

[안건 통지일 : 2023.01.20(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총 8개부문 91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지주회사의 2022년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절차·통제활동의 설계·운영,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운영 등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장치 및 그 기능, 구성 등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및 운영에 대한 평가로 당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나)2023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3.02.23(목) 10:00~10:50

[안건 통지일 : 2023.02.16(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회계감사 계약체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점검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나.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인 안전

회계법인에서 2022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심의·결의안건]

-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범기준에 부합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
- 나.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감사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 라.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

(다)2023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3.03.17(금) 11:36~11:39

[안건 통지일 : 2023.03.10(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심의·결의안건]

- 가.위원장 선임(안) : 금융전문가 김병덕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라)2023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3.04.27(목) 10:50~11:30

[안건 통지일 : 2023.04.2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1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
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2023년 1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등을 감사
위원회에 보고

(마)2023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3.07.05(수) 16:00~17:45

[안건 통지일 : 2023.06.28(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BNK저축은행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부결
나.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BNK저축은행 종합검사 결과 보고 : BNK저축은행 종합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나.BNK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보고 : BNK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 : 대상자 박태훈
나.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안) : 대상자 부장 윤혁

(바)2023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3.07.24(월) 15:40~16:35

[안건 통지일 : 2023.07.17(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2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BNK캐피탈 부문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3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23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 2023년 2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등을 감사 위원회에 보고

다.BNK캐피탈 부문검사 결과 보고 : BNK캐피탈 부문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사)2023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3.10.30(월) 11:00~11:55

[안건 통지일 : 2023.10.23(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 3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자회사 조치요구사항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3년 상반기 리스크 관리체계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 가.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보고
- 나.2023년 3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등을 감사 위원회에 보고
- 다.자회사 조치요구사항 관련 보고 : BNK저축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검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 라.2023년 상반기 리스크관리체계 제3차 점검 결과 보고 : 2023년 상반기 리스크검증부가 실시한 적합성 검증 결과에 대한 독립된 제 3자의 점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아)2023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3.12.18(월) 10:00~11:20

[안건 통지일 : 2023.12.11(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잠정)에 대한 향후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심의 · 결의안건]

- 가.감사업무 담당 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 : 대상자 전무 이한창
- 나.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잠정)에 대한 향후 방안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案)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

(자)2023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3.12.20(수) 15:20~16:00

[안건 통지일 : 2023.12.13(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1.위원 성명	김병덕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4년도 감사보조기구(검사부) 예산 편성(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자회사 중요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BNK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2024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	찬성	가결

[보고안건]

- 가.2024년도 감사보조기구(검사부) 예산 편성(안) 보고 : 감사보조기구(검사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 나.자회사 중요사항 보고 : 자회사 금융사고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
- 다.BNK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보고 : BNK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심의 · 결의안건]

- 가.2023년 검사 기본방향을 『선제적·실질적 검사를 통한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 제고』로 정하고 4가지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3)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023년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4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라.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조기구로 독립조직인 감사부를 두고 있으며, 감사담당 임원 1명(2024.1.1 신규 선임), 감사부장 1명 및 감사원 4명이 그룹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감사부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지주사와 자회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업무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감사업무 수행실적〉

일자	대상	검사 내용
2023.02.10 ~02.16	재무기획부	• 부문검사 (제12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사)
2023.02.14 ~02.17	재무기획부	• 부문검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 점검)
2023.04.17 ~04.28	BNK투자증권	• 종합검사 (경영현황, 경영전략, 재무·회계, 유가증권 매매 및 PF 취급의 적정성 점검)
2023.05.22 ~06.02	BNK캐피탈	• 부문검사(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
2023.07.28 ~08.16	경남은행	• 특별검사(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023.10.30 ~11.07	BNK자산운용	• 종합검사 (경영전략, 재무·회계, 펀드운용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일자	대상	검사 내용
2023.11.22 ~12.06	BNK캐피탈	• 종합검사 (경영전략, 재무·회계, 해외 자회사 운영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023.08.07 ~08.11 2023.12.21 ~12.28	리스크관리부	• 부문검사 (리스크관리체계 제3자 점검)
2023.12.04 ~12.06	준법감시부	• 부문검사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점검)
2023.12.15 ~12.22	쑈 지주부서	• 부문검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점검)
연 중	쑈 지주부서	• 일상감사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쑈 지주부서	• 대외보고서 (금감원 업무보고서 등 작성의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 감사 결과 (자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 경영관리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검토
연 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	• 대외 감독기관 수검 및 자회사 검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 및 그룹자산이 증가하고 업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리스크관리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성향 및 각종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견제하고 균형 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실시, 정기적인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참석위원	주요 교육내용	비고
2023.04.27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리스크관리 개요 및 관리 체계 - 리스크 개념, 당그룹 리스크관리 체계 등	
2023.07.24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 - 리스크 유형별 정의, 신용리스크 외 관리 내용	
2023.10.30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리스크한도 및 익스포져 관리 - 리스크 한도 설정, 그룹 익스포져 한도관리 등	
2023.12.20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바젤 규제 강화와 자본적정성 관리 - 바젤 자기자본 규제, 자본적정성 관리 방법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12조 ①항 4호에 의거 2011년 3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2)구체적 역할

(가)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1호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철학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3일에 개최된 201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모든 조직구성원은 제반 업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 유지를 통해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룹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2023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을 결의하였으며,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 ② 그룹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 ③ 그룹 유동성 부문 Contingency Plan 강화
- ④ 바젤Ⅲ 최종안 규제 도입 및 시스템 선진화
- ⑤ ESG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관리 체계 정립
- ⑥ 규제 대응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시스템 도입
- ⑦ (캐피탈, 투자증권) 유동성 및 부동산PF 관리 강화
- ⑧ (저축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 ⑨ (자산운용)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내실화 지원
- ⑩ 계열사 고위험자산(부동산PF 등) 관리 강화
- ⑪ 양행 "NEW 감리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 ⑫ 그룹 중복차주 관리 강화
- ⑬ 바젤Ⅲ 규제 시행에 따른 적합성 검증 강화
- ⑭ 유형별 리스크 시스템에 대한 검증 확대
- ⑮ 계열사별 리스크 점검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등

또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회사와의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리스크관련 최고이사결정기구의 결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2호에 따라 그룹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자기자본의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인 리스크성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계열사의 연간 업무계획 및 금융환경 악화 전망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성향을 설정하고, 매분기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부자본 비율(총리스크량÷가용자본)이 리스크성향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룹 리스크성향(Risk Appetite) 76.1%에 따른 그룹 총리스크허용한도 76,820억원 설정, 유형별(신용·시장·금리·운영·신용편중 등) 내부자본 한도, 계열사별 내부자본 한도 및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계열사 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총리스크허용한도 이내에서 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와 유형별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 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 가능

성을 리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총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은행계열사 및 비은행계열사별로 리스크 유형별 한도산출 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및 위기상황추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보고 함으로써, 유형별, 계열사별 리스크가 승인된 리스크허용한도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 활동내역 및 평가’의 ‘(2)회의 개최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라)리스크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정의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그룹 리스크관리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리스크유형에 기후리스크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을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문서화하고 기후리스크 관리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기타

이 밖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등 그룹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5. 외국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적합성검증 결과
6.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 리스크 발생경과 및 대응방안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의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이며,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성원

(2023.01.01~2023.03.16)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경수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유정준	사외	위원		

(2023.03.17~2023.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수희	사외	위원장	2023.03.17	2024.3월 정기주총 시까지
이광주	사외	위원		
김병덕	사외	위원		
정영석	사외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결의안건은 8건, 보고안건은 19건입니다.

8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1.31(화) 15:00~15:50

[안건 통지일 : 2023.01.25(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 상반기 통합위상항 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그룹 통합위상항 분석 시스템 고도화 완료 및 적용(안) (그룹 통합위상항 분석 사전검증 결과 포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2.12월말 기준) :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 관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결의안건]

가.2023년도 상반기 통합위상항 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상반기 통합위상항 분석 시나리오에 필요한 경제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
 나.그룹 통합위상항 분석 시스템 고도화 완료 및 적용(안) : 바젤III 마무리 규제도입에 대응하고, 위기대응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결과 및 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항을 결의

(나)2023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3.17(금) 11:33~11:36

[안건 통지일 : 2023.03.13(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수희 위원으로 선임 결의

(다)202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4.27(목) 10:00~10:50

[안건 통지일 : 2023.04.20(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	--	-------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3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 가.2022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른 적합성 검증결과 보고
- 나.2023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 2023년도 상반기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BIS비율, 내부자본, 유동성 위험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
- 다.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3.3월말 기준) :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 관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라)2023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7.24(월) 14:00~15:00

[안건 통지일 : 2023.07.17(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부동산PF 사후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비은행계열사(캐피탈, 투자증권) 유동성 현황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공동 투자 해외부동산 현황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마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23년도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2023년도 그룹 신용 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 가.그룹 부동산PF 사후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 : 자회사 부동산PF 점검 결과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 나.비은행계열사(캐피탈, 투자증권) 유동성 현황 점검 결과 : 캐피탈, 투자증권 계열사 유동성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 다.그룹 공동 투자 해외부동산 현황 점검 결과 : 그룹 공동 투자 펀드(해외부동산)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 라.바젤 거액익스포저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보고 : 바젤 거액익스포저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
- 마.2023년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에 대한 검증 결과, 개선 권고 의견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
- 바.2023년도 그룹 신용 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 그룹 신용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검증 결과, 개선권고 의견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
- 사.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23.6월말 기준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 관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결의안건]

가.2023년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필요한 경제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

(마)2023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9.21(목) 13:30~13:40

[안건 통지일 : 2023.09.14(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 발행예정인 신종자본증권 1,500억 원에 대한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결의

(바)2023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10.30(월) 15:35~16:40

[안건 통지일 : 2023.10.23(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프로젝트 종료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3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4년 감독규제 시행 예정 주요 내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2년도 소매부도율(PD) 정기검증 결과 정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프로젝트 종료 보고 : 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

나.2023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 2023년도 하반기 통합위험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BIS비율, 내부자본, 유동성 위험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

다.24년 감독규제 시행 예정 주요 내용 보고 :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규제 강화 관련 24년도 감독규제 시행 내용에 대한 보고

라.2022년 소매부도율(PD) 정기검증 결과 정정 보고 : 소매부도율(PD) 정기검증 정정 결과에 대한 보고

마.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23.9월말 기준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 관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사)2023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12.20(수) 16:00~17:00

[안건 통지일 : 2023.12.13(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1.위원 성명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新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 도입" 사업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3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3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 가."新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 도입" 사업 추진 보고 : "新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 도입" 사업 추진 목적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한 보고
- 나.2023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 리스크 지배구조, 가용자본, 내부자본비율 등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에 대한 보고
- 다.2023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개선권고 의견 및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

[결의안건]

- 가.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목표, 중점 추진과제 및 규제자본(BIS비율) 계획, 내부자본 계획,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설정(안) 결의
- 나.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 발행예정인 신종자본증권 2,000억 원에 대한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결의
- 다.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문서화(리스크유형 內 기후리스크 정의 추가)를 위한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결의

(3)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023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4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8.이사회운영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8 이사회운영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이사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관한 논의,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과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상호 견제 하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문, 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1)총괄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그룹 지배구조 및 이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제6차 이사회에서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구성원

(2023.1.1~2023.3.17)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유정준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3.3.17~2023.12.31)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경수	사외	위원장	2023.03.17	2024.3월 정기주총 시까지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이광주	사외	위원		
김병덕	사외	위원		
정영석	사외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결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입니다.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계획의 건을 결정하고 당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03.17(금) 11:45~11:55

[안건 통지일 : 2023.03.13(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최경수 이사를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나.2023년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 2023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계획, 사외이사 활동계획, 사외이사 교육 및 연수, 평가 계획 등의 수립을 결의

(나)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06.29(목) 15:00~15:40

[안건 통지일 : 2023.06.23(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접수
가.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보고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보고 :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선 및 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선,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다)2023년도 제3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3.10.30(월) 14:00~14:20

[안건 통지일 : 2023.10.23(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재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재검토 보고 : 금감원 주관,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 TF' 운영 내용 및 2023년 제2차 이사회운영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등을 보고

3)평가

당사는 이사회운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운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023년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이사회운영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9. ESG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ESG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9 ESG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26일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그룹 ESG에 관한 방향 수립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가)그룹 ESG 방향 수립

ESG위원회는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전략 방향을 수립합니다.

(나)ESG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당사는 그룹의 ESG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왔으며, 위원회는 그룹의 ESG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결의합니다.

(다)기타

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관련 대외기관 평가 결과, ESG 이행현황 등을 ESG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나.구성(ESG위원회 위원)

(1)총괄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27조의2 및 「ESG위원회규정」에 의거 이사 3인 이상으로 ESG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제6차 이사회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고, 동일자 제1차 ESG위원회에서 박우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23년 12월말 기준 ESG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포함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구성원

(2023.1.1~2023.3.17)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태섭	사외	위원장	2022.12.08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3.3.17~2023.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우신	사외	위원장	2023.03.17	2024.3월 정기주총 시까지
최경수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이광주	사외	위원		
김병덕	사외	위원		
정영석	사외	위원		
빈대인	상임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ESG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결의 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입니다. 결의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차 ESG위원회에서는 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보고 받았습니다. 제4차 위원회에서는 그룹 ESG 관련 주여 현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3년도 제1차 ESG위원회 : 2022.03.17(금) 11:42~11:45

[안건 통지일 : 2023.03.13(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ESG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박우신 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나)2023년도 제2차 ESG위원회 : 2022.04.27(목) 11:45~12:00

[안건 통지일 : 2023.04.21(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 위원장 선임(안)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컨설팅 추진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추진, 그룹 ESG Action Plan 추진 현황 점검 등을 보고

(다)2023년도 제3차 ESG위원회 : 2022.07.26(수) 15:30~15:50

[안건 통지일 : 2023.07.1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								
가.2022년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2년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2022년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내용 보고

(라)2023년도 제4차 ESG위원회 : 2023.10.31(화) 11:40~12:00

[안건 통지일 : 2023.10.23(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박우신	최경수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 그룹 ESG 통합 컨설팅 추진 및 그룹 ESG데이터플랫폼(E) 구축, 그룹 ESG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보고

(3)평가

당사는 ESG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ESG위원회가 그룹의 ESG 전략 방향성 수립과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ESG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023년 ESG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ESG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4년 2월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10.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나. 구성(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는 자회사 CEO 후보의 심사 및 추천과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위원회는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 및 관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증,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구성(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총괄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27조의3 및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 의거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으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사는 2023년 10월 31일 제11차 이사회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고, 2023년 11월 13일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광주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구성원

(2023.10.31~2023.12.31)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광주	사외	위원장	2023.10.31	2024.3월 정기주총 시까지
김병덕	사외	위원		
정영석	사외	위원		
빈대인	상임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3년 중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결의안건 10건, 보고안건 3건입니다.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광주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투자증권 CEO 경영승계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제2차부터 제5차 위원회에서는 투자증권 CEO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중 자회사(저축은행, 벤처투자, 시스템) CEO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제6차 위원회에서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개시를 결의하여 경영승계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제7차부터 제9차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벤처투자 및 시스템의 CEO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차별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3년도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1.13(월) 10:20~11:20
[안건 통지일 : 2023.11.06(월)]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3.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이광주 이사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나.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안) : 투자증권 CEO 임기 도래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증권 CEO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의

(나)2023년도 제2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1.20(월) 10:30~10:50

[안건 통지일 : 2023.11.14(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3.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안) :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투자증권 CEO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 결의

(다)2023년도 제3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1.24(금) 15:00~16:00

[안건 통지일 : 2023.11.20(월)]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 제2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CEO후보군(Long list)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안) : 제2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CEO 후보군(Long list) 대상으로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 결의

(라)2023년도 제4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05(화) 16:30~16:50

[안건 통지일 : 2023.12.01(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안) : 제1차 및 제3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변경 결의

(마)2023년도 제5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08(금) 15:00~17:30

[안건 통지일 : 2023.12.07(목)]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안) : 제1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자증권 CEO 후보자 추천 결의

(바)2023년도 제6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15(금) 10:30~11:00

[안건 통지일 : 2023.12.14(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CEO 중도사임서 접수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개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전]

가.자회사 CEO 중도사임서 접수 보고 : 저축은행, 벤처투자, 시스템 대표이사의 중도 사임서 접수보고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개시(안) : 저축은행, 벤처투자, 시스템 대표이사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3개 회사의 CEO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 개시 결의

(사)2023년도 제7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15(금)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3.12.14(목)]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안) : 제6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CEO 후보군(Long list) 선정 결의

(아)2023년도 제8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20(수) 17:00~17:40

[안건 통지일 : 2023.12.19(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접수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Long list)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 제7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CEO 후보군(Long list)의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Short list) 선정(안) : 제7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CEO 후보군 대상으로 CEO 후보군(Short list) 후보자 선정 결의

(자)2023년도 제9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 2023.12.27(수) 14:00~15:00

[안건 통지일 : 2023.12.22(금)]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빈대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군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안) : 제6차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 벤처투자, 시스템의 CEO 후보자 추천 결의

(3)평가

당사는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가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신설된 이후 실제 활동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이사회 내 임시위원회로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는 위원회 평가를 생략하였습니다.

2024년 주주총회 시 정관변경을 통해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포함할 계획이며, 2024년도부터는 위원회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그룹경영관리협의회

- 가.역할
- 나.협의절차(운영현황)
- 다.구성
- 라.활동내역 개요



11 |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가.역할

당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동 협의회를 2015년 2월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자회사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회장)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협의절차(운영현황)

동 협의회는 의장인 당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원칙적으로는 분기 1회 소집 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간사(전략기획부장)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 통지합니다. 동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이므로 심의·의결 기능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간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

- 1.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3.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사안 제외)
- 6.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당사 회장(의장) 및 9개 자회사 대표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 및 자회사의 임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전략기획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구성(당연직 위원)> (2023.12월말 현재)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빈대인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2023.03.17	2026.3월주총	의장
방성빈	부산은행 은행장	2023.04.01	2025.03.31	위원
예경탁	경남은행 은행장	2023.04.01	2025.03.31	위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2023.04.01	2025.03.31	위원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2019.10.30	2023.12.31	위원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2022.04.01	2024.03.31	위원
배상환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3.04.01	2025.03.31	위원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이사	2022.03.29	2024.03.31	위원
강상길	BNK신용정보 대표이사	2023.04.01	2025.03.31	위원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이사	2022.04.01	2024.03.31	위원

라.활동내역 개요

(1)개요

2023년 그룹경영관리협의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그룹 하반기 경영관리방안 협의, VISION2030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안), 2024년 그룹 경영계획(안) 등에 관한 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3년 제1차 그룹경영위원회 : 2023.06.09(금) / 서면회의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빈대인(의장), 방성빈, 예경탁, 김성주, 김병영, 명형국, 배상환, 김상윤, 강상길,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서면 회의	
3.협의사항	제1호 : 그룹 하반기 경영관리방안 협의	
4.보고사항	-	

(나)2023년 제2차 그룹경영위원회 : 2023.12.12(화) / 서면회의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빈대인(의장), 방성빈, 예경탁, 김성주, 김병영, 명형국, 배상환, 김상윤, 강상길,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서면 회의	
3.협의사항	제1호 : VISION2030 그룹 중장기 경영 계획(안) 제2호 : 2024년 그룹 경영계획(안)	
4.보고사항	-	

12.리스크관리협의회

- 가.역할
- 나.협의절차(운영현황)
- 다.구성
- 라.활동내역 개요



12 | 리스크관리협의회

가.역할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그룹 및 각 자회사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 ①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②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 ③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 ④ "그룹 신용 Exposure 한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관리한도의 설정 및 한도증액 (초과 예외승인 포함) 승인
- ⑤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합니다.

- ①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 ③ 그룹 리스크측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⑥ 그룹사간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신규사업 진출, 그룹차원의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⑧ 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나.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합니다. 간사인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시행결과 등을 의장 또는 협의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지주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안전내용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소관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2023.12월말 현재)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윤석준	BNK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2023.04.01	2025.03.31	위원장
박성욱	부산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2.01.01	2023.12.31	위원
윤석준	경남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3.08.09	2025.08.08	위원
신종복	BNK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23.01.01	2024.12.31	위원
한수동	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2021.06.01	2023.12.31	위원
김정훈	BNK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1.01.01	2024.12.31	위원
이승용	BNK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23.04.29	2025.04.28	위원
노동구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22.01.01	-	위원/간사

라.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23년 중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66건으로 결의안건은 19건, 심의안건은 7건, 보고안건은 40건입니다.

19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7건의 심의안건 또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기타 리스크관리협의회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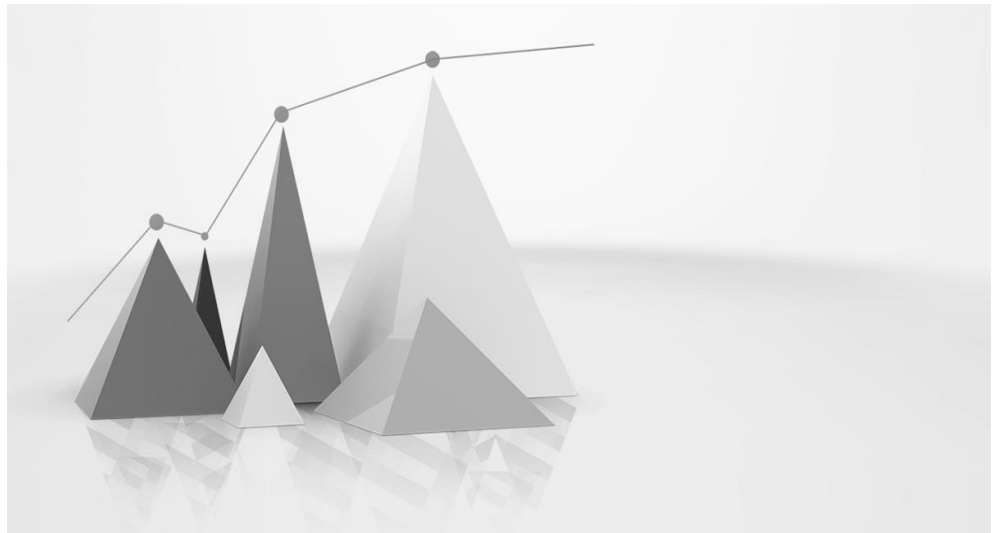
<2023년도 리스크관리협의회 활동내역>

회차	개최 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1차	1.26	[결의] 2023년 그룹 CTE 관리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2023년 그룹 신용편중위험 관리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그룹 신용Exposure한도 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결의] 그룹 리스크관리 비상조치계획 (Contingency Plan) 업무매뉴얼 개정(안)	가결
		[결의] 2023년 은행계열사 중복차주 주·부거래 지정(안)	가결
		[심의] 2023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심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고도화 완료 및 적용(안)	-
		[보고]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전검증 결과	-
		[보고] 2022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반기검증 결과	-
		[보고] 그룹 테마감리 및 일상감리 결과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2차	2.17	[결의]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유동성 부문 주의 단계 하향(안)	가결
		[결의] 그룹 신용Exposure한도 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3차	4.25	[보고] 2023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22.4분기 비소매 신용평가모형 및 비소매/소매 리스크 측정요소 모니터링 보고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회차	개최 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보고] 2022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
		[보고]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 적정성 검증 결과	-
		[보고] 바젤Ⅲ 시장리스크 新표준방법 사전검증 결과	-
4차	5.26	[결의] 그룹 신용Exposure한도 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결의] '23년 계열사 위험가중자산 관리한도 조정(안)	가결
		[보고] '23.1분기 부동산PF 모니터링 보고	-
5차	7.21	[결의] 2023년 그룹 부동산PF 관리한도 변경(안)	가결
		[심의] 2023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보고] 그룹 부동산PF 사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보고] 비은행계열사(캐피탈, 투자증권) 유동성 현황 점검	-
		[보고] 그룹 공동 투자 해외부동산 현황 점검 결과	-
		[보고] '23년 상반기 그룹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보고	-
		[보고] '23.1분기 비소매 신용평가모형 및 비소매/소매 리스크 측정요소 모니터링 보고	-
		[보고] 2023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
		[보고] 2023년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6차	8.2	[결의]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유동성부문 단계 격상(안)	가결
7차	8.30	[결의] 그룹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유동성부문 단계 조정(안)	가결
		[결의] 그룹 리스크관리 비상조치계획 업무매뉴얼 개정(안)	가결
		[결의] 그룹 기업 신용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가결
		[결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업무매뉴얼 개정(안)	가결
		[보고] 비은행계열사 유동성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개선내용 보고(캐피탈 / 투자증권 / 저축은행)	-
		[보고] 비은행계열사 유동성 관리 방안 보고(캐피탈 / 투자증권)	-
		[보고] 부동산PF 익스포져 제지표 관리현황 보고	-
8차	9.20	[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

회차	개최 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9차	9.25	[보고]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경과보고	-
		[보고] 그룹 연결 LCR / NSFR 규제시행 및 대응방안 보고	-
		[보고] '23년 2/4분기 그룹 핵심리스크지표(KRI)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보고] 캐피탈 / 투자증권 유동성 관리방안 보고	-
		[보고] 그룹 공동 해외투자 부동산 현황	-
		[보고] 중국 부동산發 경기침체 관련 그룹 리스크 점검 보고	-
10차	10.27	[보고] 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프로젝트 종료 보고	-
		[보고] 2023년도 하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2022년도 소매부도율(PD) 정기검증 결과 정정 보고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11차	12.15	[결의] 2024년도 국가별 신용등급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전략/평판리스크 측정 가중치 재조정 및 업무매뉴얼 제정(안)	가결
		[결의]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결의] 그룹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지침 제정(안)	가결
		[심의] 2024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
		[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관련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
		[심의]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
		[보고] "新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PSMOR) 도입" 사업 추진 보고	-
		[보고] 23년 3/4분기 그룹 핵심리스크지표(KRI)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보고] 2023년도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2023년도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
		[보고] 2023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수시검증 결과	-
		[보고] 캐피탈 및 저축은행 리스크관리체계 점검 결과	-
[보고] BNK자산운용의 그룹 공동 해외투자 부동산 현황 보고 ('23.11월)	-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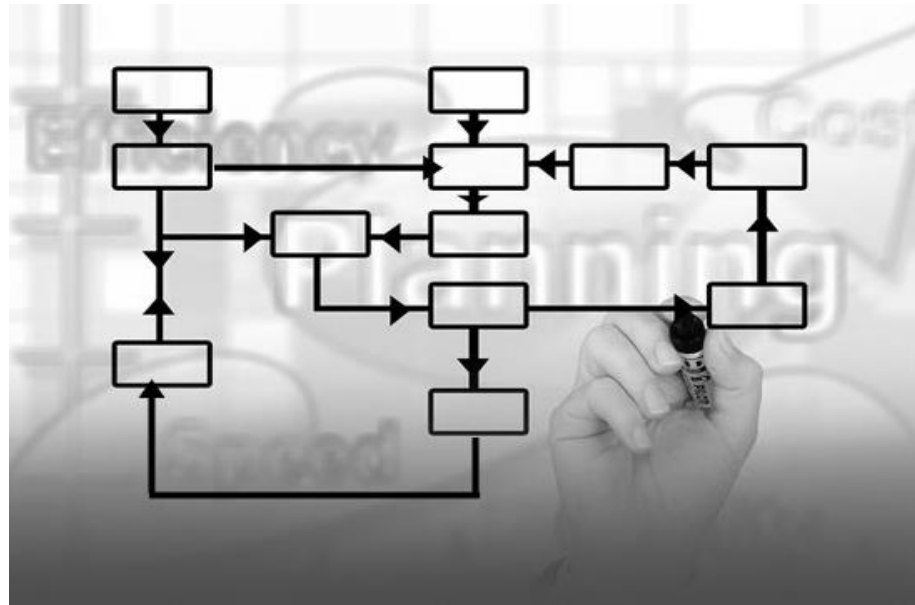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mpensation Practices
BNK Financial Group

BNK 금융지주

Beyond No.1 in Korea

BNK

1.보수위원회

가.총괄

나.구성

다.권한과 책임

라.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보수위원회

가.총괄

당사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회사의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변동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상기 보상정책이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5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11년 3월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 10월 28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명칭을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의 특성 상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구성

(1)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7조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과 보수체계 결정을 위해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운영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 등 검토 시 리스크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총 4명의 보수위원회 위원 중 이광주 위원장과 최경수 위원은 각각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여 금융시장은 물론 회계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김병덕 위원은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을 역임하여 자금 운용 제도 평가 및 개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영석 위원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교수 및 법제처 법제자문관으로서 당사 내규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2023년 말 현재 위원 4명은 모두 보수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2년 이내로서 보수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2023년 3월 정기주총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김수희	위원장	여(여)	무	現)주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 前)주지어소프트 법무팀장
허진호	위원	여(부)	무	現)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 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태섭	위원	여(부)	유	前)경성대 경영학부 교수 前)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박우신	위원	여(여)	유	前)㈜씨텍 대표이사 前)호남석유화학 재무부부장

②2023년 12월말 현재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중사한 경험 유무	약력
이광주	위원장	여(여)	유	前)부산은행 사외이사 前)한국은행 부총재보
최경수	위원	여(부)	유	現)세무법인 두리 고문 前)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병덕	위원	여(여)	유	現)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
정영석	위원	여(여)	무	現)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現)법제처 법제자문관(입법자문관)

(2)구성원

(2023.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최초 위원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광주	사외	위원장	2023.03.17	2024.3월 정기주총시까지
최경수	사외	위원	2023.03.17	
김병덕	사외	위원	2023.03.17	
정영석	사외	위원	2023.03.17	

다.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하며,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받기 위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13명에 대한 2022년도 단기 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을 결정하고, 성과보수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경영진 장·단기성과 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3)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작성하여 고시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수위원회 결의 후 2023년 2월 2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 : 3월 17일)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 및 ‘2023년도 경영진 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을 통해 성과보상 구조, 보상 방법 및 지급률 조정을 포함하여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영진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단기 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부여하여, 개인별 종합평점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 후 익년도에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장기성과급은 3년의 평가기간 동안 평가지표의 평균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익년도부터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특성과 업무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성과보수 비중을 차등화하여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년 10월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폐지하고, 「보수위원회 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소집방법, 심의·결의사항 및 결의방법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법규 준수 여부 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안건 등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각종 재무지표 비율 등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

른 보수 지급체계에 리스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하여 내규 및 운영 상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2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에 대한 의결을 통해 성과보상에 대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평가를 통해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 지주회사 경영진에 적용(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전원)
- ② 해외 : 해당사항 없음

보수위원회는 당사의 보수정책을 결정하며,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은 각 회사의 보수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주 사전협의 및 보고 등을 통해 그룹 보수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23일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계약 체결 대상자는 각각 대표이사 회장 및 부사장, 전무, 상무를 포함한 임원 총 16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배구조법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딜링 등에 종사하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6명	회장 1명, 부사장 2명 ^{주)} , 전무 7명 ^{주)} , 상무 6명 ^{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해당사항 없음

주)2023년 중 퇴임임원 8명 포함

라.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김수희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토록 정하고 있으며,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통지방식은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E-mail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중에는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가 없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 자료 배포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보수위원회 개최 전 반영하며, 보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 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23년에는 총 4회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

가 확정 및 보상, 2020년도 경영진 장기 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 2023년도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위원장 선임/변경, 2023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 개정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3)회의 개최내역

(가)2023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3.02.23(목) 10:50~11:20

[안건 통지일 : 2023.02.16(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 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도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 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을 결의함.

나.2020년도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 2020년도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을 결의함.

다.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 2023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음. 평가지표 중 RORWA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그룹글로벌 부문장 평가를 삭제함

라.2023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 2023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성과평가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

마.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지배구조법 및 당사 내규에 의거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하여 결의

(나)2023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3.03.17(금) 11:30~11:35

[안건 통지일 : 2023.03.10(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이광주 위원을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다)2023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3.04.27(목) 11:30~11:45

[안건 통지일 : 2023.04.2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지주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변경토록 결의

(라)2023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 2023.10.30(월) 15:50~16:00

[안건 통지일 : 2023.10.23(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광주	최경수	김병덕	정영석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결의안건					
가.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 개정(안):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23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에 내부통제평가 항목 신설토록 결의

(4)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전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항목으로 위원회 참석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과 연간 계획 등을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023년도 보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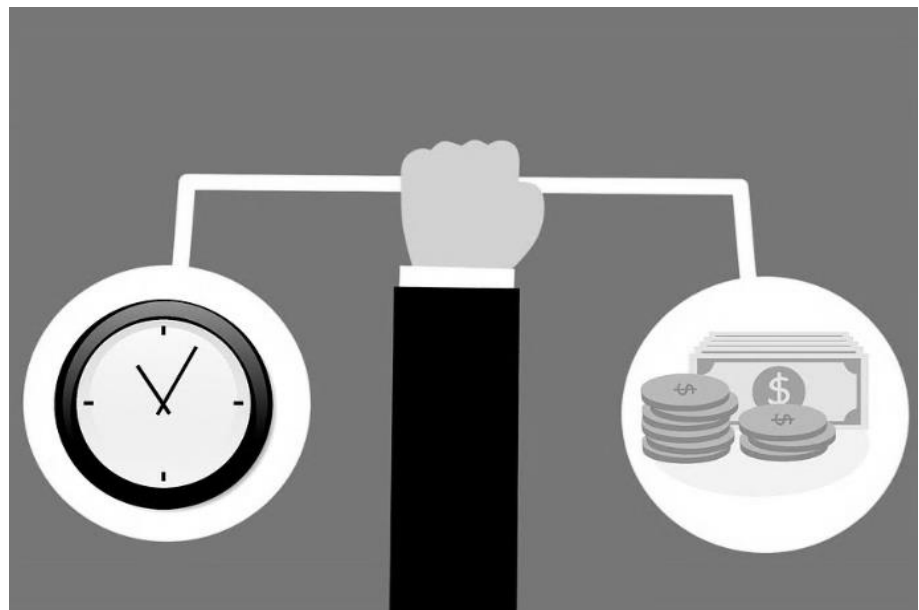
동 결과는 2024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되었으며,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어 원안대로 결의되었습니다.

2.보수체계

가.주요사항

나.보수 세부사항

다.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단기적인 외형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ROE, ROA, RORWA), 건전성 지표(실질고정이하여신 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자본적정성 지표(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율), 효율성 지표(Cost-Income-Ratio), 안정성 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주주수익률(상대적TSR)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지표로는 ‘그룹경영혁신과제’ 이행, 사업 부문별 ‘담당업무 전략과제’, ‘경영진 개인역량 평가’ 및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룹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사업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등을 고려한 세부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적 재무성과를 공통으로 반영하되,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배점 비중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인 경영혁신과제, 담당업무 전략과제,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등은 경영진 담당 업무를 반영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사적 재무성과 지표를 공통으로 활용하되,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배점 비중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측정 지표로는 비재무 지표인 해당 경영진의 담당 부문별 전략과제 이행 결과,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개인역량 평가가 있으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와 개인의 성과측정 지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2)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 경영진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제1차 보수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성과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기성과급은 계약체결 연도를 포함한 3개 연도를 평가하여 평균 달성률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금액을 확정 후,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주가연계 현금보상)은 장기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3년간에 걸쳐 이연 지급을 하며, 이연 지급 시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성과급 환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중징계를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으며(개별 환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환수평가 지표에 의한 환수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감(전체 환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 성과급은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 중 변동 보상액 결정 시 이연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 지급 시점의 주가와 연동하여 결정되므로 지급 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 경영진의 보수체계는 고정보수와 변동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로 분류하고, 경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단기 및 장기 성과보수는 변동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가치 및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그룹 내 보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연 지급 비중은 경영진 직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 경영진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합니다.

(4)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일반직원의 동기부여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 급여 외 ‘이익배분제’와 ‘조직성과급’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분제는 그룹 전체 이익 목표달성률에 따라 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조직성과급은 성과 평가를 통해 산출된 부서별 조직기여도 등급 및 그룹 전체 이익 목표 달성률에 따라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성과 공유라는 취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무와 성과중심 보상문화를 위해 3급 이상 관리자급 일반직원은 연봉제, 4급이하 일반직원은 밴드형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직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조직에 공헌과 임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별도 요청이 없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 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단기성과평가 리스크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내부통제평가 항목을 반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단기 성과평가의 경우 리스크 수익성지표(RORWA) 관리 강화를 위해 RWA 초과 시 자본적정성 훼손 비용 산출 기준을 강화하여 BIS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진의 내부통제활동에 따른 가감점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내부통제 활동 강화를 유도토록 개선 하였습니다.

나.보수 세부사항

(1)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주1)}	법인세차감전		임직원수 ^{주3)} (C)	임직원 평균보수 (A/C)
		순이익 (B) ^{주2)}	비율 (A/B)		
전년도 (2022년)	205	11,000	0.019	183	1.12
당해년도 (2023년)	220	11,252	0.020	207	1.06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2023년은 2022년말 기준 금액 기재) 및 2023년 수정 결산 수치 반영

주3) 계열사 겸직 및 퇴직자 포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주2)}				
		등기 임원 ^{주1)}	사외 이사	업무 집행 책임자	1급	2급	3급	4급	기타
전년도 (2022년)	보수 총액	7.6	4.8	28.9	8.0	11.2	42.8	45.5	28.1
	성과 보수액	6.9	-	19.8	0.52	0.93	2.84	2.58	2.23
당해년도 (2023년)	보수 총액	5.8	4.9	21.6	9.7	8.2	54.9	52.8	26.3
	성과 보수액	8.0	-	25.0	1.05	0.44	3.39	2.51	0.17

주1) 등기임원 :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퇴직자 포함)

주2) 직원 : 계열사 겸직 및 퇴직자 포함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 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2년)	임원	10	31.7	35.5	20.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8	21.0	16.9	10.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사외/비상임이사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성과 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35.5	14.8	-	20.7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16.9	6.9	-	10.0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주식 : 발행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

주2)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 형태가 현금이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해당 사항에 기재

주3)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3)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주1)}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주2)}	지급미확정 ^{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65.1	-	65.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12.8	-	12.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1)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기재

주2)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특정년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특정년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2년)	임원	65.1	-	-	65.1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12.8	-	-	12.8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 액	이연보수액의 발생년도별 구분						
			t기 (2023년)	t-1기 (2022년)	t-2기 (2021년)	t-3기 (2020년)	t-4기 (2019년)	t-5기 (2018년)	t-6기 (2017년)
전년도 (2022년)	임원	65.1	-	20.7	35.6	6.8	1.4	-	0.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12.8	10.0	1.1	1.7	-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3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3년(t기) 발생분, 2022년(t-1기) 발생분, 2021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 된 금액 ^{주4)}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	-	-	65.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	-	-	12.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해당년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 주2)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3)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4)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2년)	임원	4	2.4	1.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3년)	임원	1	0.06	0.06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관련규정 등)

1. 정관
2. 지배구조내부규범
3. 이사회규정
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6. 보수위원회규정
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8. 감사위원회규정
9. ESG위원회 규정
10.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
11.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12. 자회사CEO경영승계규정
13. 사외이사운영규정
14.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15. 그룹 내부통제규정
1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정 관



2011. 3.15 제정
 2012. 3.27 개정
 2013. 3.28 개정
 2014. 3.28 개정
 2015. 3.27 개정
 2016. 3.25 개정
 2017. 3.24 개정
 2019. 3.28 개정
 2021. 3.26 개정
 2022. 3.25 개정
 2023. 3.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2015.3.27 개정)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2015.3.27 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3.3.28, 2017.3.24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거나 것으로 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④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⑥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13.3.28, 2021.3.26 개정)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8 개정)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2013.3.28 개정)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 ⑥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14.3.28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개정)
-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3.28 개정)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 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3.26 개정)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3.28 개정)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2021.3.26 개정)

제17조 (2019년 3월 28일 삭제)

제18조(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2021.3.26 개정)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19.3.28, 2021.3.26 개정)

③제2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021.3.26 개정)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③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9.3.28 신설, 2021.3.26 개정)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2021.3.26 개정)

제19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는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②이 회사는 이사회는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
2. 이 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2017.3.24 개정)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2019.3.28 개정)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3.28 개정)

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2013.3.28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8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7.3.24 개정)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2017.3.24 개정)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9.3.28 신설)
- 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9.3.28 개정)
- ⑤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2013.3.28, 2019.3.28 개정)
- ⑥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2017.3.24 개정)
2.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이 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2016.3.25, 2017.3.24 개정)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2017.3.24 개정)

제38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2017.3.24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2017.3.24 개정)

제44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6.3.25 신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6.3.25 신설)

제45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2.4.15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4.15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

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24 신설)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2017.3.24 개정)
6. ESG위원회(2021.3.26 신설)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2022.3.25 개정)

②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2022.3.25 신설)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019.3.28 개정)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017.3.24 개정)

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3.24 개정)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2017.3.24 개정)

④제3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2017.3.24 개정)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2017.3.24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감사할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2항을 준용한다.(2017.3.24 개정)
-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선정한다. (2019.3.28 개정)
- ⑨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5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4.15 개정)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012.4.15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 선임)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9.3.28, 2021.3.26 개정)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023.03.17 개정)

④제3항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3.03.17 신설)

제59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023.03.17 개정)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3.03.17 개정)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012.4.15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2.4.15 신설)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

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3.28, 2021.3.26 개정)

제60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3.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3.17 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02.27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7.14.26 개정
 2017.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12.26 개정
 2018.07.31 개정
 2019.13.25 개정
 2019.03.28 개정
 2020.02.27 개정
 2020.07.27 개정
 2020.12.23 개정
 2021.03.26 개정
 2022.03.03 개정
 2023.10.31 개정
 2024.01.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주회사등”이란 BNK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018.2.8 개정)
 9. “이사회등”이란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결의한 사람을 말한다.
- ②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등의 활동내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의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 의 구성) 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2.27 개정)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
 5.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7.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12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 ②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2018.2.8 신설)
- ⑤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 ⑥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3.3 개정)

- 제1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9.3.5 개정)
-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

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보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5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영 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2018.7.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위원회(2021.3.26 신설)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2019.3.28, 2021.3.26 개정)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정)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0.2.27, 2022.3.3 개정)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2019.3.5 개정)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의결 및 집행기구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2018.2.8, 2023.10.31 개정)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정 사항
10. “그룹 신용 Exposure한도관리 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2020.7.27 신설)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수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22.3.3 개정)
7. 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및 경영진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 (2022.3.3 신설)
8.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2(ESG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21.3.26 신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021.3.26 신설)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2021.3.26 신설)

-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 2.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27조의3(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23.10.31 신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023.10.31 신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2023.10.31 신설)

- 1.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 관리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증
- 3.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 4.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5.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그룹경영관리협의회) ①회사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11.6 신설)

②협의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제29조(리스크관리협의회) ①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3.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4. “그룹 신용 Exposure한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관리한도의 설정 및 한도증액(초과 예외승인 포함) 승인 (2020.7.27 개정)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①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은 제17조를 준용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②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그룹의 수익·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③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및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부여 받은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4조(임원의 선임) ①회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③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연임 및 승진 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로 임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와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17.12.8, 2020.12.23, 2022.3.3 개정)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퇴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7.31 개정)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입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 임원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회사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다.

③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성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방법) ①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및 활동수당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된다. (2018.2.8 개정)

②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7.27 개정)

③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7.27 개정)

④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지급 시 환수율을 산정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2020.7.27 개정)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지주회사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이사회사무국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24.01.01 개정).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2024.01.01 개정).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4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2020.2.27 개정)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등에서 정한다.

제4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 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조(정기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

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연차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 및 공시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2017.12.8 개정)

1. 이사의 선임 및 퇴임(사임 포함)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3.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②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제4호의 경우 제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4.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9조(내부통제기준) ①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0조(위험관리기준) ①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5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지배구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 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1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내용은 2019.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12.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2. 3.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항 개정내용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3.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4.01.01 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규정



2011.0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2.07.20 개정
 2012.12.28 개정
 2013.08.22 개정
 2014.03.31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07.31 개정
 2019.13.25 개정
 2020.02.27 개정
 2020.07.27 개정
 2021.03.26 개정
 2022.03.03 개정
 2023.10.31 개정
 2024.01.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회장)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7.31 개정)

제9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가.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연결 재무제표 기준)
- 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 3. 자회사 관리
 - 가. 자회사등의 편입·제외 및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기존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편입 및 제외 시점의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같음한다.(2018.7.31 개정)
-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 라.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
 - 바.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2023.10.31 신설)
 - 사. 자회사CEO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2023.10.31 신설)
 - 아. 경영진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자.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2022.3.3 신설)
 - 차. 내부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 카. 리스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 타.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 파.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 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2019.3.5 신설)
 - 거.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 너. 상기 각 호의 규정의 폐기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한다.
-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 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 제외)
 - 바. 이사 후보의 확정
 -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 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 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
 - 차.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 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파. 고문, 명예이사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2022.3.3 개정)
 - 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
 - 나. 건당 소가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 7.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 다. 자금 차입
 - 라. 사채의 발행
 - 8. 기타 사항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나. 지주 업무 총괄 사장 직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18.7.31 신설)
 -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단, 소각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함) (2020.7.27 개정)
 - 마.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
 - 바.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 사.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아.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상기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2.27 개정)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 3. 분기별 결산결과
 -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5.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 7.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위원회(2021.3.26 신설)

②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13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담당 경영진 또는 이사회사무국장이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장은 배석하여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2018.2.8, 2024.01.01 개정)

제15조(의견의 청취) ①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사무지원 등) ①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은 이사회사무국이 담당한다.

②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제공 등 이사회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③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019.3.5 신설)

④이사회 의전관련 사항은 비서실에서 담당한다.(2018.2.8, 2022.3.3 개정)

제17조(의사록) ①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③이사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 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 개정내용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4.01.01 부터 시행한다.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6.10.28 개정
 2019. 3.28 개정
 2021. 3.26 개정
 2024.01.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2019.3.28, 2021.3.26 개정)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3.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작성) ①이사회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2013.8.22, 2014.12.29, 2024.01.01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 3. 26 부터 시행한다.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4. 01. 01 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5. 2. 4 제정
 2015.11. 6 개정
 2016.10.28 개정
 2018. 2. 8 개정
 2018. 2.26 개정
 2020. 2.27 개정
 2022. 3. 3 개정
 2024.01.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정)
 ②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0.2.27, 2022.3.3 개정)

③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이사회사무국은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24.1.1 개정).

1.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등 관련 업무 지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이사회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24.1.1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③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④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⑤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4.1.1 부터 시행한다.



보수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 2. 8 개정
 2021. 1. 1 개정
 2022. 3.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경영진”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2018.2.8 개정)

②“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22.3.25 개정)
 7. 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및 경영진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2022.3.25 신설)
 8.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에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위원회는 관련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경영지원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21.1.1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은 2016년도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와 보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5.02.04 개정
 2016.10.28 개정
 2017.12.19 개정
 2018.07.31 개정
 2020.07.31 개정
 2023.10.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6.10.28 개정)
 (2023.10.31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10.28 개정)

제4조(소집)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10.28 개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28 개정)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2016.10.28 신설)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정 사항 (2016.10.28 신설)
10. “그룹 신용 Exposure 한도관리 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 (2020.7.31 신설)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2016.10.28 신설)

1.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취득에 관한 사항
2.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2016.10.28 개정)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한도의 관리현황(2017.12.19 개정)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2015.2.4 신설)
5. 외규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적합성검증 결과(2017.12.19 개정)
6.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 리스크 발생경과 및 대응방안(2018.7.31 신설)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28 신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지원 및 의사록 작성) ①리스크관리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6.10.28 개정)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의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또는 절차와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31 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2011. 3.15 제정
 2012. 7.20 개정
 2015. 2. 4 개정
 2016.10.28 개정
 2018. 3.19 개정
 2018.10.31 개정
 2019. 3. 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015.2.4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2018.3.19 개정)
4.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 (2019.3.5 개정)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제4조의1(경영정보 요구 등) ①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한다. (2016.10.28 개정)
③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3.19 개정)

제9조(회의 종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2018.3.19 개정)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해임 요청 (2019.3.5 개정)
8.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폐쇄.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9.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0.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8.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9.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12.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2018.10.31 신설)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7.20 개정)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14조(권한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015.2.4 개정)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전·사후 감사(2018.3.19 신설)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된 사항은 위원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이사회보고)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5장 보칙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②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경영진은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경과 및 대응 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3.19 신설)

제17조의1(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0.28 신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 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세칙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5 부터 시행한다.



ESG위원회규정



2021. 3.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 2.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2.ESG 관련 대외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3.ESG 경영 이행 현황 등

③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23.10.31 제정

2024.01.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자회사 CEO 후보의 심사 및 추천과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회사 CEO 후보자 발굴, 관리 및 관련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증
3.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회사 CEO 후보자 심사 및 추천
5.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①회사는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회사는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결의로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이사회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24.1.1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015. 2. 4 제정
 2015.11. 6 개정
 2016.10.28 개정
 2018. 7.31 개정
 2020. 2.27 개정
 2024.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전항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

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2020.2.27 개정)

④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을 구성한다.(2020.2.27 개정)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조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18.7.31 개정)

②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7.31 개정)

③제2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부서) ①이사회사무국은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24.1.1 개정).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2024.1.1 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4.1.1 부터 시행한다.

[별표]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OO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 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000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p>마. 00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p>		

< 작성요령 >

1. ‘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00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00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자회사CEO경영승계규정

2023.10.31 제정

2024.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 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회사는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회사는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자추위 결의로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자추위는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이 변경될 경우, 자추위에서 결의한 자회사CEO경영승계계획을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자회사 CEO 자격요건) ①자회사의 CEO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자회사 CEO 후보자는 자추위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해당 자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금융산업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
4. 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평 등이 양호한 사람

③자추위는 자회사별 특성을 감안한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추위의 결의로 자회사별로 별도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자회사 CEO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 및 개시 시기는 자회사별 상황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추위에서 정한다.

②자추위는 자회사별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해야한다.

제5조(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 절차) ①자추위는 그룹,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②자추위는 자회사 CEO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정, 자추위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자회사 CEO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자추위는 자회사 CEO 후보군 탐색 시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④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 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추위에서 정한다.

제6조(자회사 CEO 후보자의 경영승계절차) ①회사는 자추위에서 승인한 자회사 CEO 경영승계계획에 의거 자회사별 육성후보군을 구성한다.

②자추위는 제3조 및 자추위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자회사별 CEO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회사는 자추위에서 선정한 자회사별 CEO 후보자를 해당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자회사에서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CEO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자추위는 자회사 CEO 후보 평가 및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후보자 평가 및 검증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자회사 CEO 유고 시 비상승계계획) ①자회사 CEO의 유고 상황 발생 시 해당 자회사의 이사회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회사는 지체없이 자추위를 개최하여 CEO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자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자회사의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이사회사무국은 자회사 CEO 후보 추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2024.1.1 개정).

- 1.자회사 CEO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지원
- 2.자회사 CEO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업무 지원
- 3.그 밖에 자회사 CEO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또는 자추위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2024.1.1 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31 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운영규정



2011. 3.15 제정
 2013. 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 2. 4 개정
 2015.11. 6 개정
 2016. 3.25 개정
 2016.10.28 개정
 2017. 4.26 개정
 2018. 7.31 개정
 2024.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4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제7조 제6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외이사 선임)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6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해당 금융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사외이사의 임기) 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7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

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외이사의 책임) ①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자회사등을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 갱신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 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계열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회원·사원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

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 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제14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내 위원 연임 제한) ①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의 작성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2017.4.26 개정)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2018.7.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

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외이사의 보수) ①회사는 사외이사에게 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게 이사회등의 활동, 간담회 활동, 사외이사회의, 이사회 워크숍, 그룹 내·외부 연수 참여,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한 임직원 면담, 퇴임식 행사 등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편익(교통, 숙박, 식사, 차량 지원, 연수비, 체육활동비, 감사패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사무국으로 한다(2024.1.1 개정).

②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제2항 제2호의 업무 지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입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 ①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 및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관계법령상 특례적용, 주주총회의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령과 관계) ①이 규정이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교육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가주기, 사외이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4.1.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별첨)

<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사외이사 00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000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사외이사 경력	
라. 후보제안자 : 000	
1)인적사항	
2)후보자와의 관계	
3)추천 사유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2) 대주주와의 관계	

	3) 임원과의 관계	
바. 자격총족 여부		
	심사항목	총족여부 총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사.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2) 적극적 요건 총족	
	3) 현재 겸직 업무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2. 000

※이하 양식은 위 III. 1. 과 동일

<작성요령>

1. 'I.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은 각 사외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라. 후보 제안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III. 1. 나. 후보자 경력'은 사외이사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4. 'III. 1. 다. 사외이사 경력'은 후보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주요 실적 등을 기재
5. 'III. 1. 라. 2) 후보자와의 관계'와 'III. 1. 마. 3).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첨부(관련규정)

6. 'Ⅲ. 1. 바.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7. 'Ⅲ. 1. 바. 2) 적극적 요건'은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과 후보자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Ⅲ. 1.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3) 현재 겸직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근무해야하는 모든 업무 및 당해 업무를 위한 연간 근무시간을 기재
9. 'Ⅲ. 1.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10. 'Ⅲ. 1.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첨부
11. 'Ⅲ. 1.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검토보고서를 첨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2015.12.17 제정

2016.10.28 개정

2018. 2. 8 개정

2018. 7.31 개정

2020. 5. 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경영진”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2018.2.8 개정)
- 2.“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결의한 자를 의미한다.
- 3.“변동보상”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지급되는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 4.“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은 주식(주가연계 현금보상을 포함한다) 등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에 정해진 결정 방법 및 계산식에 따라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 정도에 연동하여 행사 가격, 부여 수량, 효력 발생 기간 등이 결정되는 주식보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1.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2.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총변동보상액(total variable compensation)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핵심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는 보상정책을 건전하게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대상자는 경영진(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성과평가 및 보상절차) 회사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다.

1. 위원회는 그룹의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는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맞추어 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3. 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결의한다.

제6조(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으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해당부서·회사 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3. 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③ 회사는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보수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2018.7.31 신설)

제8조(이연지급) ①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020.5.8 개정)

②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2020.5.8 개정)

제9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회사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 중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2020.5.8 개정)

②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보유기간(이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등 그 행사가 적절하게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외에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형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의 주식연계 상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장기성과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성과급은 경영실적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이연 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 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2020.5.8 신설)

제10조(성과보수 환수) ①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중징계를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이미 지급된 성과보수 포함)를 환수할 수 있다. (2020.5.8 개정)

②전항의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제재 절차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제재 및 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2020.5.8 개정)

③장기성과급은 이연기간 동안 별도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재무성과를 기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2020.5.8 신설)

④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성과보수 환수 여부, 환수 범위, 환수 방법, 환수 시기 등

세부사항은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2020.5.8 신설)

제11조(보상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회사의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위험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지표) ①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예측, 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1.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
- 2.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 3.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 4.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할 것

5.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를 반영할 것
6. 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할 것
7.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것

제15조(보상 관련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상 관련 공시방법은 회사 및 금융업권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17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기준에 체결한 계약은 해당 제도 종료일과 계약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제3(적용례)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① 이 규정은 2016.10.28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8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은 2020년도부터 적용한다.

그룹 내부통제규정

2011. 3.15 제정

2012. 5.10 개정

2016.10.28 개정

2018. 5.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 등(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지주회사법,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그룹 내부통제」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가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룹 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 관련 조직, 규정 등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대상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지주회사등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관리) ①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주사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 또는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지주회사등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지주사는 자회사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경영 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영위하여야 하며,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등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함에 있어 자회사등에 대한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지주사의 임직원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⑦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회사등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⑧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등의 역할 구분) ①지주사의 이사회는 지주회사등을 통한

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자회사등의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각 회사별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한다.

③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별 내부통제업무 및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지주사의 준법감시인(이하 「그룹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은 지주회사등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이 경우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규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이사회 등이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위원회) ①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④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제3장 업무수행시 준수절차

제8조(업무수행시 준수절차)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

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 및 의사 전달

제9조(전달체계) ①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전달방법) ①지주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식문서(지주회사등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지주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통제기준 준수 확인 및 처리

제11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그룹 준법감시인은 지주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 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자회사 등 및 관련부서는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전협의 등)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등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윤리규범 등

제14조(윤리경영) 지주회사등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선관주의의무)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내부고발제도) ①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

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지주회사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주회사등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명령휴가제도) 지주회사등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고위협사무 직무분리) 지주회사등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보호) ① 지주회사등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제22조(영업점 자체점검) 지주회사등은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주기 등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 지주회사등은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지주회사등의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지주회사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2018. 5. 2 신설)

1.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불공정행위의 방지

제25조(불공정행위의 방지)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관련 내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그룹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④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 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8장 이해상충방지 등

제26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①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그룹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④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이해상충 등의 처리절차) 지주회사등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평가·관리) ①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서(지주사 및 관련 자회사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지주회사등사이의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②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등은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시 준수사항) ①지주회사등이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 시스템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지주회사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고객 보호 및 지주회사등간 이해상충 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고객정보의 공유) ①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②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지주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자회사등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목적 외의 사용여부, 보안대책 또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광고 등) ①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회사 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 여부, 지주회사등이 다른 자회사 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른 관련 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등을 광고문안에 표시하여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9 장 준법감시인

제32조(임면)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내규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주회사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회사 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가 아닌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 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 개최일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임면보고) ①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임기) 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보수 및 평가) 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각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의무와 권한)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부 등 해당 자회사등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등의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부 등 지주회사등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독립성 보장) 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위임사항)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사 내규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룹 준법감시인의 직

무와 지원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5.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5.2 부터 시행한다.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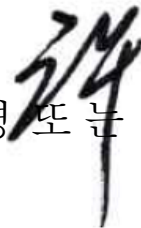
후보대상자	검토인견
최경수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주)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허진호 (서명 또는 날인)



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 5, 순 §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 6, 순 §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금융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 · 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 8 ③ 해당 여부	충족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금융회사 및 한국거래소 등에서 근무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21년	7회 (7회)	100%	21회 (21회)	100%
2022년	13회 (13회)	100%	27회 (27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22년은 2022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23.2.22까지 산정
()는 총 개최횟수

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등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 동 후보자는 재정 분야 공직자 및 금융회사 CEO 경력을 보유한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음
-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 등 재정 분야 공직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현대증권 사장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2021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 특히, 2022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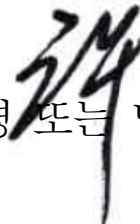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박우신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주)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허진호 (서명 또는 날인)



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 5, 순 §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 6, 순 §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 · 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 8 ③ 해당 여부	충족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임원 이상 경력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21년	6회(7회)	86%	21회(24회)	88%
2022년	12회(13회)	92%	29회(29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22년은 2022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23.2.22까지 산정
()는 총 개최횟수

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등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 동 후보자는 호남석유화학 및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주)씨텍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음
-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2021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 특히, 2022년 감사위원장으로 경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